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2015·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심포지엄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 **일 시 :** 2015. 12. 10(목) 14:00~17:3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심포지엄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 **일 시 :** 2015. 12. 10(목) 14:00~17:3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개 요

■ **13:30~14:00 등 록**

■ **14:00~14:30 개회식**

개 회 사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축 사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황인태 한국회계학회 회장,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편호범 수원대 석좌교수

■ **14:30~15:50 제1세션** 사회자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주제 1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발 표 자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토 론 자 김경호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숙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제 2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발 표 자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토 론 자 이정은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조성훈 머니투데이 경제부 차장,
김상노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

■ **15:50~16:00 coffee break**

■ **16:00~17:20　제2세션**　사회자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3 「중앙관서 재무회계정보 품질평가 체계 구축」
발 표 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자　이경섭 前 감사원 국장,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허　웅 이정회계법인 이사

주제 4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발 표 자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토 론 자　박성동 통계교육원 원장, 문창오 공공기관연구센터 재무분석팀장, 이정택 한국전력 재무처 차장

■ **17:20~17:30　질의 응답 및 폐회**

목 차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 1

발표 :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31

발표 : **윤재원** (홍익대학교)

중앙관서 재무회계정보 품질평가 체계 구축 / 61

발표 :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 87

발표 : **전규안** (숭실대학교)

제1주제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 발표 :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2015. 12. 10.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ntents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Ⅳ. 해외주요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Ⅴ.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연구 목적

-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가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인적자원과 예산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와 지자체 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조사
-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 국가와 지자체 개혁백서, 국가 및 지자체 회계기준 및 지침, 국내외 사례조사,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당시 기준 제·개정에 관여했던 교수 및 회계사들 대상 자문 등 의견 수렴

Contents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Ⅳ. 해외주요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Ⅴ.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1. 주요 선행연구

➢ **정부회계기준 제정운용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권수영,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01.11.)**

- (목적) 국가회계 출범에 즈음하여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기준 제정운용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 (내용) 미국 등 5개국의 기준 제정기구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회계환경을 고려하여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설치에 대하여 4가지 방안 중 독립된 정부회계 제정기구의 설립 제안

➢ **정부회계기준의 이원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심재영, 정부회계연구, 2011.6.)**

- (목적) 발생주의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이원화의 적합성
- (내용) 정부 환경, 재무보고의 목적, 기준 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 등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정부회계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제안

➢ **발생주의 재무회계 결산제도의 유용성 강화 연구 (정성호,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2014.10.)**

- (목적)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결산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방안
- (내용) 국가회계 운용체제와 동일하게 지방회계법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고 전문지원조직으로 지방회계통계센터 설치 제안

1. 주요 선행연구, 계속

- **일본 공회계 기준 설정 (일본공인회계사협회, 2014. 8.)**
  - (목적) 해외 주요국의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에 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공회계기준 설정주체의 바람직한 조직체계 방안 제시
  - (내용) 미국 등 8개국의 공회계기준 설정주체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고 품질의 일본 공회계기준 마련을 위해서 단일의 기준 설정주체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유사한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에 대한 공동자문기구 사례 제시**
-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간 차이 원인 분석을 통해 차이 정도와 방향성 검토**
-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 제안**

Contents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Ⅳ. 해외주요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Ⅴ.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발생주의 회계제도 진행 현황

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 단계 (1998년~2008년)

시기	국가	시기	지자체
'98.5.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방침 공식 발표**		
'99.5.	**발생주의 회계도입 관련 연구용역**	**'99. 4.** **'99.12**	**부천시, 강남구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개발 연구기관 지정** **발생주의 회계기준 및 전산 시스템 용역(99.12.~01.3.)**
'00.2.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설치	**'01. 3.**	지자체 회계기준 시안 마련, 회계처리시스템(LADI) 개발 및 강남구, 부천시 시범운영
'02.3.	정부회계법 시안 마련		
'03.3.	**재정관련 법 체계 협의(02.6.~03.5.)** - 국가재정법과의 상충	'03.8. **'03.10.**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복식부기 시험운영 (7개) 확대시범**
'04.5.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출범	**'04.10.**	**복식부기 시험운영 (54개) 확대시범**
'05.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착수('05.11.~'06.12.)	**'05. 8.** **'05.10.**	지방재정법 ('05.8.), 지방재정법 시행령 ('05.12.) **복식부기 시험운영 (187개) 확대시범**
'06.10.	국가재정법 ('06.10), 국가재정법 시행령 ('06.12)	**'06.10.**	**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07. 1. **'07.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통 및 운영** **국가회계법 제정**	**'07. 1.**	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시행
'08. 2. '08.1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국가자산 실사용역 국가회계법 개정	'08. 기중 '08.12.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심의위원회 폐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 제정**
'09. 1.	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시행		

2)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계 (2009년~2015년)

시기	국가	시기	지자체
'09. 1. '09. 3. '09.4. '09.3.~9.	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시행, 국가회계법 시행('09. 1. 1.)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09.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국가회계 준칙 및 회계처리지침 제정: 원가계산준칙,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지침 등(12개)**		
'10. 3. '10. 7.	국가회계제도 3개년 추진계획 마련(시스템, 인력, 인프라)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10.1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행자부훈령) 제정**
'11. 8. ~12.	**국가회계 준칙 및 회계처리지침 제정: 연금·보증·보험회계 준칙,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주요 사항별 회계처리지침(9개)**		
'12. 5.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최초 국회제출		
'14. 1. '14. 12.	국가회계기준센터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설기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통합 운영 국가회계예규 정비(25개→22개) (문단식, 문단제정근거, 실무해설, 적용사례 반영)		
		'15.10. '15.12.	지방회계법안 상정 -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 추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8

2. 법령체계,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1) 국가와 지자체 회계관련 법령 및 지침 체계

구분	국가회계		지자체회계	
법 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안)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훈령		국가회계예규 (22개)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 (4개)
매뉴얼		결산작성지침		지자체 결산작성통합기준

2)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체계

구분		국가회계기준	지자체회계기준
기준제정기구		국가회계제도심의회	지방회계제도심의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심의사항	✓ 국가회계 제도·운영 ✓ 국가회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폐지 ✓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 회계제도의 연계 등	✓ 지방회계 관련 주요 정책 ✓ 회계 및 결산제도 ✓ 지방회계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근거	국가회계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	지방회계법안 제11조
지원조직체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회계통계센터(설립 추진 중)
	관련근거	국가회계법 제11조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2	지방회계법 제13조
	연구분야	✓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등	✓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등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차이

1)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차이 분석

✓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차이(총 25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고유특성에 기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미미(8건, 32%) 하였고, 담당자의 실무편의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17건, 68%)임

차이유형 / 발생원인	인식/평가 차이	표시 차이	계	발생원인별 주요 사례		
				구분	국가회계	지자체회계
고유특성	3건	5건	8건 (32%)	▪ 공시(과목수준, 공시과목, 공시수)	세분화↓ / 전비품 / 적음	세분화↑/주민편의시설 /많음
				▪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의 표시	순자산 또는 비교환수익	일반수익
				▪ 일반유형자산의 소액자산 금액 기준	건당 50만원	건당 10만원
				▪ 장기충당부채의 구분	퇴직급여·연금·보험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실무편의 등 특별한 원인 없음	12건	5건	17건 (68%)	▪ 유가증권의 단가결정 방법	총평균법 등	총평균법
				▪ 대손 설정 방법	연령분석법 등	3년 평균 결손경험율
				▪ 재고자산 평가 규정	저가법	규정 없음
				▪ 용어의 차이	프로그램수익 / 비교환수익 등	사업수익 / 일반수익
				▪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의 이익 처리	비교환수익으로 인식	순자산 증가로 인식
				▪ 국세수익, 지방세수익의 인식시점	징수방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	징수방식 관계없이 인식
				▪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구분	재무제표에 부속서류를 포함
				▪ 순자산의 분류	조달원천별 분류	기능용도별 분류
계	15건	10건	25건			

➢ 국가 또는 지자체 고유특성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그 외 실무 편의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은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3.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 차이

2) 발생 원인별 주요 사례

❖ 국가와 지자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구분	기준 차이	국가회계	지자체회계	차이 원인
인식 기준 차이	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소액자산 금액 기준	▪ 건당 취득원가 50만원	▪ 건당 취득원가 10만원	▪ 관계법령의 차이(국가: 물품관리 시행령 제24조/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평가 기준 차이	②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 투자목적인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	▪ 규정 없음(기말 공정가액 평가 수행하지 않음)	▪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열거된 사무만 수행하므로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취득 가능성 낮음
	③ 파생상품의 평가	▪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	▪ 규정 없음(기말 공정가액 평가 수행하지 않음)	▪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열거된 사무만 수행하므로 파생상품 취득 가능성 낮음

2) 발생 원인별 주요 사례, 계속

❖ 국가와 지자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

구분	기준 차이	국가회계	지자체회계	차이 원인
재무제표 표시 차이	④ 공시과목 수준	▪ 지자체회계기준에 비해 세분화 안됨	▪ 국가회계기준에 비해 세분화 됨	▪ (지자체) 주민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므로 국가에 비해 공시과목 수준이 세분화 되어 있음
		▪ 일반유형자산: 전비품 포함 ▪ 편의시설: 일반유형자산에 포함	▪ 일반유형자산: 전비품 없음 ▪ 주민편의시설: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과 구분	▪ (국가) 전비품의 경우 국가에서만 보유 ▪ (지자체) 일반유형자산과 별도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
	⑤ 공시사항 내용	▪ 주석 8개, 필수보충정보 8개, 부속명세서 13개 (29개)	▪ 주석 30개, 필수보충정보 5개, 부속명세서 5개 (38개)	▪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제공 ▪ (지자체) 주민에게 상세한 정보 제공
	⑥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의 표시	▪ 행정형회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 ▪ 사업형 회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등으로표시	▪ 회계실체의 구분 없이 재정운영표의 '일반수익'으로 표시	▪ (국가) 행정형회계(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국고금 통합관리에 따라 수입을 국고에 불입하고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개별 회계실체의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
	⑦ 유가증권의 구분	▪ (유동성 분류)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 (형태별 분류) 채무증권, 지분증권(출자금 포함), 기타증권	▪ 유동성 분류 없음. 모두 장기투자증권 ▪ (형태별 분류) 투자채권, 투자주식, 출자금	▪ (지자체) 매매를 통한 단기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단기투자증권 인식하지 않음
	⑧ 장기충당부채의 구분	▪ 퇴직급여, 연금, 보험, 기타장기충당부채로 구분	▪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 보험 충당부채 없음)	▪ (지자체) 연금 및 보험사업 미 수행

3.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 차이

2) 발생 원인별 주요 사례, 계속

❖ 담당자의 실무편의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구분	기준 차이	국가회계기준	지자체회계기준	비고
인식 기준 차이	① 유가증권의 단가결정 방법	▪ 총평균법, 개별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 총평균법 적용	▪ 특별한 원인 없음 (지자체 실무편의)
	② 개별자산 대응이 어려운 일괄 취득 부대비용의 처리	▪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시 비용화	▪ 공사지가 큰 주된공사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가능	▪ 특별한 원인 없음 (국가/지자체 실무편의)
	③ 유산자산 취득 관련 비용의 처리 및 자산인식 미술품 등의 범위	▪ 유산자산 취득에 관련된 지출은 '유산자산취득비'로 처리	▪ 유산자산 취득에 관련된 지출은 '기타유산자산'으로 표시	▪ 특별한 원인 없음
	④ 내부거래에 의한 관리전환 시 취득원가	▪ 유상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무상 :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특별한 원인 없음
	⑤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이익의 처리	▪ 비교환수익으로 인식	▪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	▪ 특별한 원인 없음
	⑥ 국세수익, 지방세수익 인식시점	▪ 징수방식에 따라 달리 인식 (신고납부/부과/원천징수 등)	▪ 징수방식에 관계없이 징수결의 확정 시점	▪ 특별한 원인 없음
평가 기준 차이	① 대손 설정 방법	▪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 등의 방법 중 선택	▪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	▪ 특별한 원인 없음 (지자체 실무편의)
	② 저리 제공 융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	▪ 규정 없음	▪ 특별한 원인 없음
	③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 정액법 원칙, 예외 인정	▪ 정액법 원칙, 예외 규정 없음	▪ 특별한 원인 없음

3.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 차이

2) 발생 원인별 주요 사례, 계속

❖ 담당자의 실무편의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

구분	기준 차이	국가회계기준	지자체회계기준	비고
평가 기준 차이 (계속)	④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 재평가 규정 존재	▪ 재평가 규정 없음	▪ 특별한 원인 없음 (지자체 실무편의)
	⑤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대상	▪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감가상각비 대체 가능	▪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별한 원인 없음
	⑥ 재고자산 평가 규정	▪ 저가법 평가	▪ 규정 없음	▪ 특별한 원인 없음 (지자체 실무편의)
재무제표 표시 차이	① 재무제표의 구성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부속서류)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유예),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 특별한 원인 없음
	② 재무제표의 표시	▪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 사업총원가/사업수익/사업순원가/일반수익	▪ 특별한 원인 없음 (용어차이)
		▪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회계실체별 금액 표시하지 않음	▪ 각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와 내부거래금액까지 총액 표시	▪ 특별한 원인 없음
	③ 미수채권의 유동성 분류 및 현재가치 평가	▪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 현재가치평가 수행	▪ 모두 유동으로 분류, 미수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미수행	▪ 특별한 원인 없음
	④ 전세권 등기한 임차보증금 분류	▪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임차보증금으로 분류	▪ 무형자산(용익물권)으로 분류	▪ 특별한 원인 없음
	⑤ 순자산의 분류	▪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조달원천)	▪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기능/용도)	▪ 특별한 원인 없음

Contents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Ⅳ. 해외주요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Ⅴ.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해외주요국의 정부회계기준 체계

✓ **중앙과 지방에 일원화된 회계기준 적용하는 국가: 호주, 뉴질랜드**

(호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IFRS에 기반을 둔 동일한 회계기준(AASB)을 적용하며,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특수한 회계처리를 단일 기준 체계 하의 일부 기준서로 규정함

(뉴질랜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개념체계의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을 분리함. 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

✓ **중앙과 지방에 이원화된 회계기준 적용하는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발생주의 도입 초기부터 IFRS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정부(재무성)와 지방자치체(CIPFA)의 회계기준을 마련 (즉, 동일 기준 체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

(미국/프랑스) 실질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회계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정부회계기준 일원화 또는 이원화 적용 국가들간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음**

2) 해외주요국의 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 중앙과 지방에 일원화된 회계기준 적용 국가(호주, 뉴질랜드): 하나의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연방	주/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회계기준	SFFAS	SGAS	FReM	SORP	재무부 회계기준	내무부 회계기준	AASB 기준서	NZ IFRS	국가 회계기준	지자체 회계기준
제정 자문기구	FASAB	GASB	재무성	CIPFA/LASAAC	재무부	내무부	AASB	NZASB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FRAB 자문		CNOCP 자문					
지원조직	FASAB사무국	GASB사무국	FRAB 사무국	CIPFA/LASAAC 사무국	CNOCP 사무국		AASB 사무국	XRB 사무국	국가회계재정 통계센터	지방회계 통계센터

✓ 중앙과 지방에 별도 회계기준 적용 국가(미, 영, 프): 공통의 기준 자문기구 또는 지원조직 (미국 제외)

(미국) 연방정부 회계기준(SFFAS)은 FASAB에서, 주/지방정부 회계기준(SGAS)은 GASB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정기구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별도로 운영(주 정부의 자치권, 미합중국 헌법)

(영국) 중앙정부 회계기준은 재무성에서,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CIPFA와 LASAAC의 합동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기준 제정 자문기구인 FRAB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준 모두 관여

(프랑스) 중앙정부 회계기준은 재무부가, 지자체 회계기준은 내무부가 각각 행정명령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제정 자문기구로 CNOCP 및 그 사무국을 공통으로 둠

Contents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Ⅳ. 해외주요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Ⅴ.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회계기준 일원화 여부 검토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회계기준의 일원화 논의

✓ (공공부문 특성) 민간부문에는 없는 개념이나 특수한 회계처리(예: 비교환거래, 사회기반시설, 군사자산 등) 존재

✓ (해외사례) IFRS와 IPSAS 별도 존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별도 회계기준 설정

➢ 공공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과는 다른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별도의 회계기준 마련이 필요

2)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일원화 논의

✓ (이론적) 국가와 지자체 고유특성에 기인한 차이*가 공공과 민간의 차이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기준 일원화로 한정된 인적자원 및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양질의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국가와 지자체 고유특성에 기인한 차이

- (국가회계) 국고금 회계, 국가통합FS 작성, 조직개편, 중앙관서별 기능 상이, 거시적 관점의 정보제공
- (지자체회계) 지자체별 성격 유사, 재원의 독립성 강조, 미시적 관점의 주민밀착형 정보제공

✓ (현실제약) 소관 부처나 관련 법령, 예산결산 등이 국가와 지자체 간 상이하고, 회계기준도 소관부처의 부령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되어 있음

➢ 현실적인 제약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을 이원화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고유 특성 또는 관련 법령이나 예산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준 차이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동일한 기준 마련 필요

2. 기준 제정기구 또는 지원조직 일원화 여부 검토

1) 정부회계 기준 제정기구의 일원화 또는 이원화의 장·단점 분석

구분	회계기준 제정기구 일원화	회계기준 제정기구 이원화
장점	• 회계기준 간 통일성·일관성 제고 • 한정된 인적자원 및 예산을 집중 투입으로 양질의 회계기준 마련 가능 • 회계기준 제정에 국가 및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관여함으로써 특정 관계자의 과도한 영향력 배제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당면한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회계기준 제·개정 신속·용이 • 정부회계분야 전문 인력 저변 확대
단점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당면한 과제 신속한 대응 어려움 • 국가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수반	• 회계기준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 필요 •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저하

2) 정부회계 기준 제정(자문)기구 일원화로 중앙과 지방회계기준 간 정합성 제고 사례

(프랑스) 중앙정부 회계기준은 재무부가, 지자체 회계기준은 내무부가 각각 행정명령 형태로 규정하지만 기준제정 자문기구(CNOCP, 정부회계기준심의회)와 지원조직(사무국)을 공통으로 설치·운영

(영국) 회계기준과 제정기구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만 동일한 자문기구(FRAB)를 설치·운영

(우리나라 민간회계)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그 외의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단일의 제정기구(회계기준위원회)와 지원조직(한국회계기준원)이 담당

2. 기준 제정기구 또는 지원조직 일원화 여부 검토, 계속

3)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 제정기구 일원화의 현실적 제약

- ✓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안)」에 의거하여 각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설치를 별도로 규정
- ✓ 제정기구 단일화는 법 개정 등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율 필요

4) (대안) 제정기구의 회계기준 제·개정 실무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의 일원화

- ➢ (회계기준의 정합성) 실무 지원조직은 회계기준 제·개정에 있어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 수행
- ➢ (전문인력의 집중) 정부회계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연구기관을 각각 설립하여 귀중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단일의 정부회계 기준 연구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

<국가회계기준과 지자체회계기준 제정 초기>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제정 초기에 제정기구의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중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 간 용어 등 미미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기준 초안 작성을 담당한 회계법인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기준 제정 초기 참여한 전문가들 인터뷰 결과)

3.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상생 방안

1) 회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 제·개정 시 사전 협의 필요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4조에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규정 존재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부처협의 및 의견조회 규정>

제 · 개정 절차	내 용	기한	비고
입법예고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 관보, 신문, 인터넷, 방송 등 ** 입법예고기간 단축 시 법제처장과 협의 필요	40일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45조
부처협의	▪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 * 의견회신기간 단축 시 법제처장과 협의 필요	10일 이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 지방회계법(안) 제12조에서 지방회계기준(행정자치부령) 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

- 지방회계법(안) 제12조 (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양자 간 형식적인 사전 협의 장치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Due Process를 구체화 하여 법령 등에 반영, 명문화할 필요

3.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상생 방안

2) 회계기준 제정기구 구성 시 인적 교류 필요

✓ 해외주요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인적 구성

- (미, **FASAB**) **GAO, OMB** 및 재무부가 각각 지명한 **1**인 이외에 주·지방정부 감사인 **1**인이 포함
- (영, **FRAB**/프, **CNOCP**) 국가와 지자체에 공통된 회계기준 자문기구를 두고 있고,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민간부문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위원을 초빙

✓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심의회의 인적 구성

- (관계부처 공무원) 감사원·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 위원)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민간심의위원에 포함

➢ 실질적인 제정기구간 인적 교류 대안

-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대표자격을 가진 1인 또는 각 위원회의 지원조직의 장을 구성원으로 추가
- 국가와 지방회계제도 추진 과정에서 초기 기준 제정기구 민간위원의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 간 기준 차이가 최소화 되었음

3.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상생 방안

3) 회계기준 연구기관 간 기능 차별화

✓ 국가와 지자체 고유 특성에 따른 주요 차이

구분	국가	지자체
회계실체 (실질)	▪ 국가통합실체	▪ 243개 지자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관심정보	▪ 국가 재정건전성 및 장기 재정전망 ▪ 부처별 원가/이익 < 정책사업별 성과/원가	▪ 지자체별 재원의 독립성 또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 ▪ 지자체별 재정운영결과 ▪ 재무결산 품질 개선
연구방향	▪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방안 ▪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 재정지표 연구	▪ 재정건전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방안 ▪ 미시적 관점의 지자체 재정건전성/ 운영의 효율성 관련 평가지표 개발

➢ 연구기관간 기능 차별화 대안 제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부회계 분야에 대한 회계기준·개념 연구, 재정통계에 대한 연구 선도
- (지방회계통계센터) 지자체 회계정보 이용자와 작성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 컨설팅 기능 주력

3.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상생 방안

4) 회계기준 연구기관 간 상호 교류 필요

➢ (인적교류) 회계기준 연구기관 간 질적 성장

- 회계기준 제·개정을 위한 내부 연구 진행 시 센터장 또는 책임연구원 등 자문위원으로 참여
- 양 기관에 일정기간 직원 파견 등을 통하여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에 정통한 전문인력 양성

➢ (공동연구) 정부회계분야 주요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 국가회계기준과 지자체회계기준의 상위 개념인 개념체계 마련(또는 개념체계 필요성 검토)
- 비교환거래·공공부문 특수 무형자산(예: 주파수)·유산자산·군사자산 등 정부회계의 특수 회계 이슈
- 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학계와 업계를 포괄하는 정부회계분야 네트워크 공유

- 공동 세미나 개최
- 공동 협의체 운영

Thank You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제2주제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발표 : **윤재원** (홍익대학교)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2015. 12. 10

심재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재원(홍익대학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12년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

▶ 국가재정활동의 회계책임성, 의사결정유용성, 투명성 제고 목적

▶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널리 활용되지 못함

▶ 국가재무보고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과 혜례(안)을 제안`

정보이용자

-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SFFAC 4)
  - 국민
  - 정보중개인(citizen intermediaries)
  - 의회
  - 연방정부 행정관리자
  - 프로그램관리자

- 주된정보이용자(SFFAC 4)
  - 외부정보이용자인 국민과 정보중개인

3

국가재무보고의 목적과 이용자의 정보요구

▶ 회계책임성(SFFAC 1)

- 예산무결성(budget integrities)에 관한 정보
- 운영성과에 관한 정보
- 수탁책임에 관한 정보
- 재무관리시스템과 내부회계 및 통제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유용성

- 재정운영의 효율성
- 재정건전성
- 정부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 개별적인 관심을 갖는 정부활동에 관한 평가

국가회계정보와 국민의 특성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정보의 성격

- 고도로 요약된 정보
- 국가재정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정보
-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보이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민개개인의 관심(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

▶국민의 특성

- 수준높은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고 시간을 할애하기 원치 않음

5

대국민 해례의 필요성

▶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감사, 국회제출 및 공시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만으로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보수요를 통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 회계책임성과 의사결정유용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국민과 이해와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친화적인 추가적 노력이 필요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의 현황분석(1)

▶ 총 1,369쪽의 보고서(2014년) 중 국가재무제표는 384쪽(28%)으로 방대한 분량, 전문적인 내용, 수치중심, 전형적인 정부간행물의 형태로 보통의 국민의 이해가능성이 낮음

▶ 보고서내 결산개요(63쪽) 중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은 5쪽(8%)로 세입세출결산에 비해 분량과 분석의 설명이 매우 부족

▶ 열린재정을 통해 전자공시되는데, 예산과 달리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친화적 통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포탈서비스의 주제어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링크되지 않아 접근가능성이 낮음

7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의 현황분석(2)

▶ 국가결산보고서(2014)의 구성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

구 분	쪽수	비율(%)
1. 결산 개요	63	4.4
2. 세입세출결산	903	65.9
3. 재무제표	384	28.0
4. 성과보고서	17	1.2
계	1,369	100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의 현황분석(3)

▶ 결산개요의 구성

내용 구성		쪽수	비율	내용
개요		2	0.7	국가결산체계,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경제여건		7	11	세계경제, 국내경제
예산편성 및 집행		5	8	2014년 예산안 편성, 국회확정내용 등
재정활동		7	11.7	최근재정운용현황, 재정수지, 국가채무
결산의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	34	54	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 등
	국가재무제표	5	8	총괄, 자산, 부채, 재정운영결과
	성과보고서	1	0.3	성과
	소계	40	62.3	-
총계		63	100%	-

9

국가재무제표 해례의 외국사례분석(1)

▶ 국가통합재무제표의 해례의 방법

- **본보고서**의 일부로 제공하는 방법
  - **결산개요**/토론과 분석 등
    -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
  - 국민을 위한 별도의 해설
    - 미국의 대국민 보고서(Citizen Guide)
- **별도**의 해설서를 제공하는 방법
  - 주무부처 **웹사이트**에 결산개요의 **요약본**을 제공하는 방법
  - 정부재무보고의 목적/기초개념 등에 관한 **Q&A** : 캐나다 (PSAB)
  -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해설서** : 미국(GAO)

국가재무제표 해례의 외국사례분석(2)

▶ 외국의 결산개요의 시사점

- 분석과 설명의 범위와 내용이 상세하고 풍부
- 도표와 설명을 통한 이해가능성 제고노력
- 보통의 국민이 이해가능한 수준보다는 전문적임

국가	호주	영국
해설서 명칭	Commentary	Performance Report
분량	30 페이지	25 페이지
작성주체	Minister for Finance	HM Treasury
주요내용	– 재무결과요약 – 토론과 분석 · 운영보고서분석 · 재무상태표분석 · 현금흐름표분석 · 현금기준분석 · 약정/우발부채	재무결과요약 주요변화분석 주요추세분석 (현금기준 요약/ 경제지표 포함)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특징	도표와 그림위주 추세분석(5년)	좌동

11

국가재무제표 해례의 외국사례분석(3)

▶ 영국 결산개요의 financial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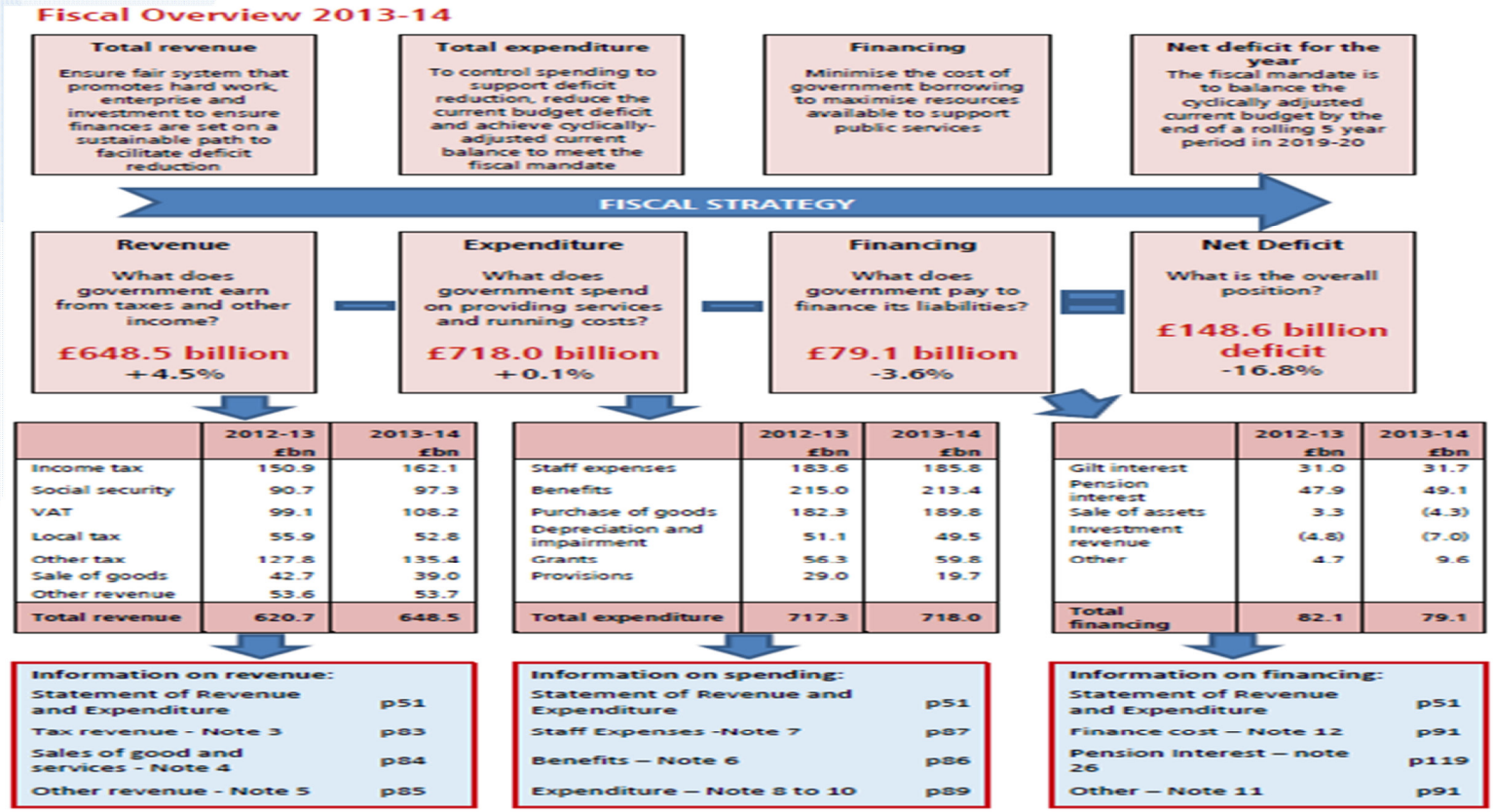

국가재무제표 해례의 외국사례분석(4)

▶미국의 대국민 보고서의 특징

- 국민을 위해 결산개요와 별도로 작성
- 결산개요에 비해 요약수준이 높고 간결(8쪽, 6개 차트 1개 표)
- 본보고서의 일부로 책임과 권위를 가짐
- 재무제표의 현황(Where we are new) 뿐 아니라 전망(Where we are headed)제시에 중점을 두고 작성
  - 재정의 지속가능성(1980-2089)과 재정혁신의 필요성, 지연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07년에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Health)'이란 명칭으로 최초 작성

13

국가재무제표 해례의 외국사례분석(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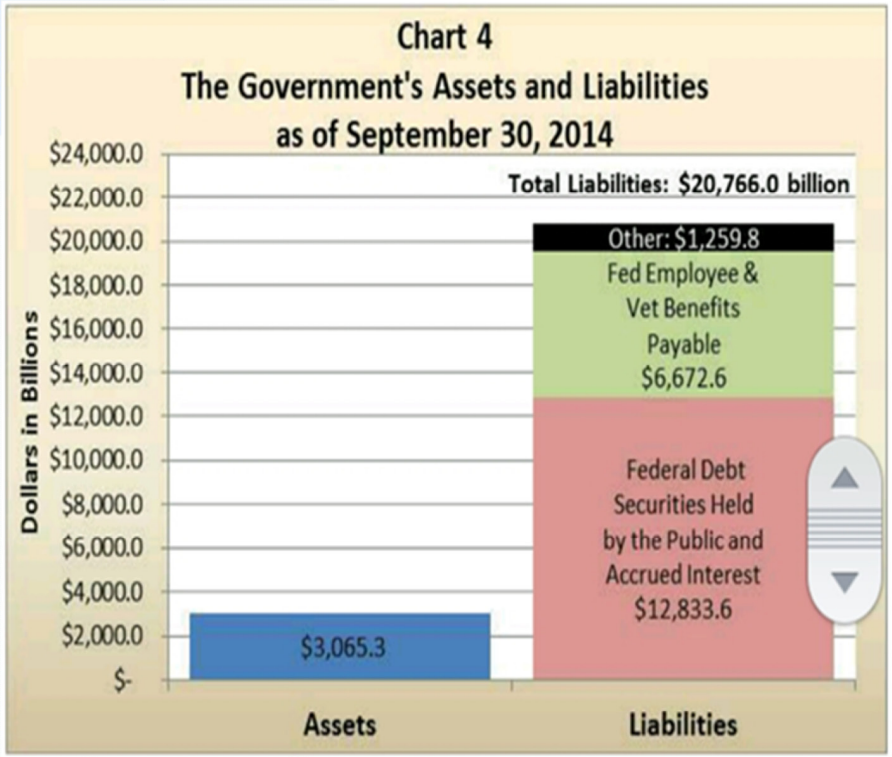

국가재무제표 해례의 전략적 기본방향

국민의 자발적 정보수요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능동적인 전파전략 실행

국민의 정보요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해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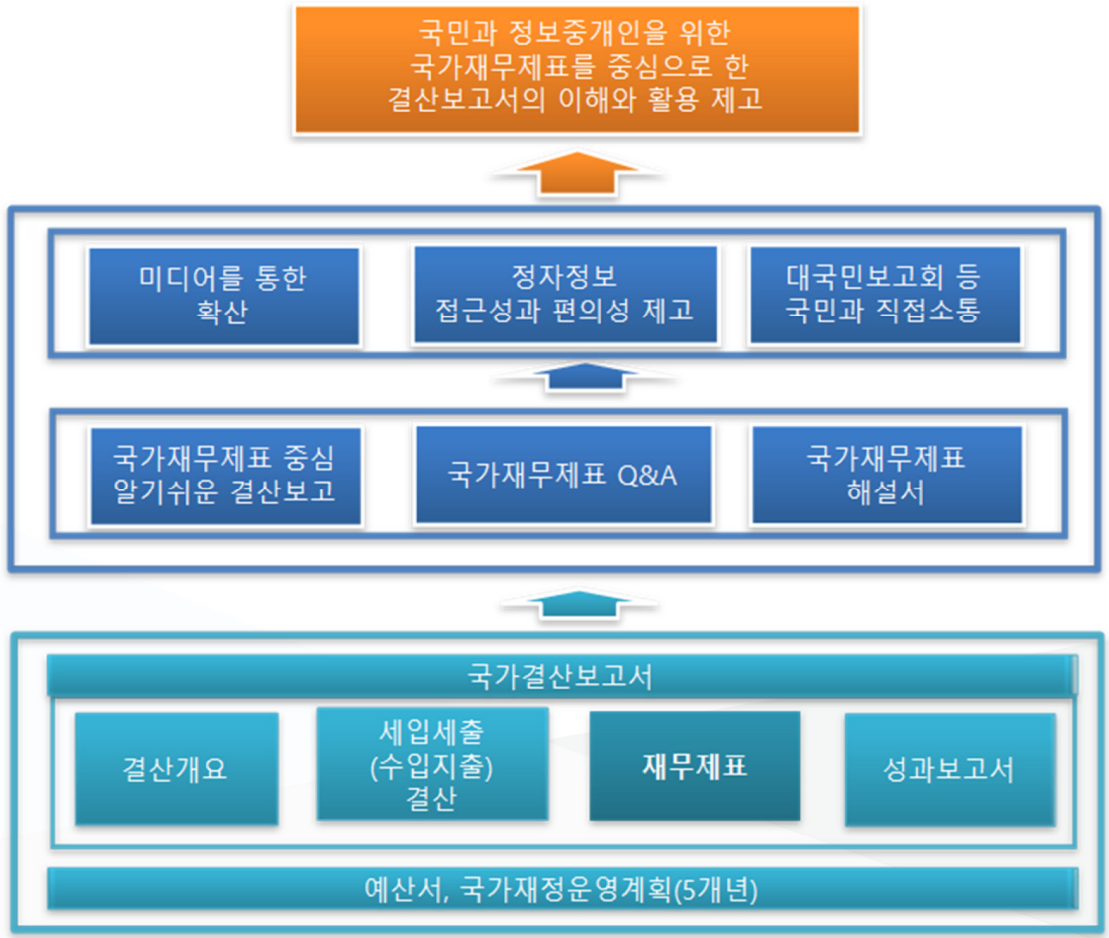

15

알기쉬운 결산보고 작성원칙

▶ 국민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목적적합한 정보

- 주된 정보로 발생주의 재무결산을 중심으로 재정활동 전반에 관한 고도로 요약된 핵심 정보 제공
  - 경제전망, 주요정책, 예산,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중장기재무전망을 모두 포괄
- 부가정보로 국민관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고려

▶ 신뢰성있는 정보

- 주무부처가 작성
- 사실에 기초한 중립적인 설명과 분석

▶ 이해가능한 정보

- 다른 자료를 참조할 필요없이 하나의 책자로 재정활동 전반을 이해
- 일간신문의 경제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참조
- 가독가능한 분량(10쪽 이내)과 정부간행물의 전형적인 형식을 탈피한 독자친화적 기술

알기쉬운 결산보고의 구성

서론	1. 가이드의 목적과 성격 2. 국가결산보고의 법적근거, 목적, 감사, 보고책임
경제여건 및 재정운영 목표	1. 국내외 거시경제현황 2. 재정운영목표, 중점추진과제, 예산개요
결산요약	1. 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결산제도 설명 2. 결산요약 및 비교
국가재무제표 현황분석	1. 국가재정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마련되었나? 재정운영표 (1) 재정지출 : 재정운영순원가 (2) 재정수입 : 비교환수익 2. 국가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재정상태표 (1) 자산 (2) 부채
국민관심지표	조세부담, 복지 및 고용, 경제성장, 장래세대부담 등에 관한 지표
맺음말	1. 결산총평 2.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17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 결산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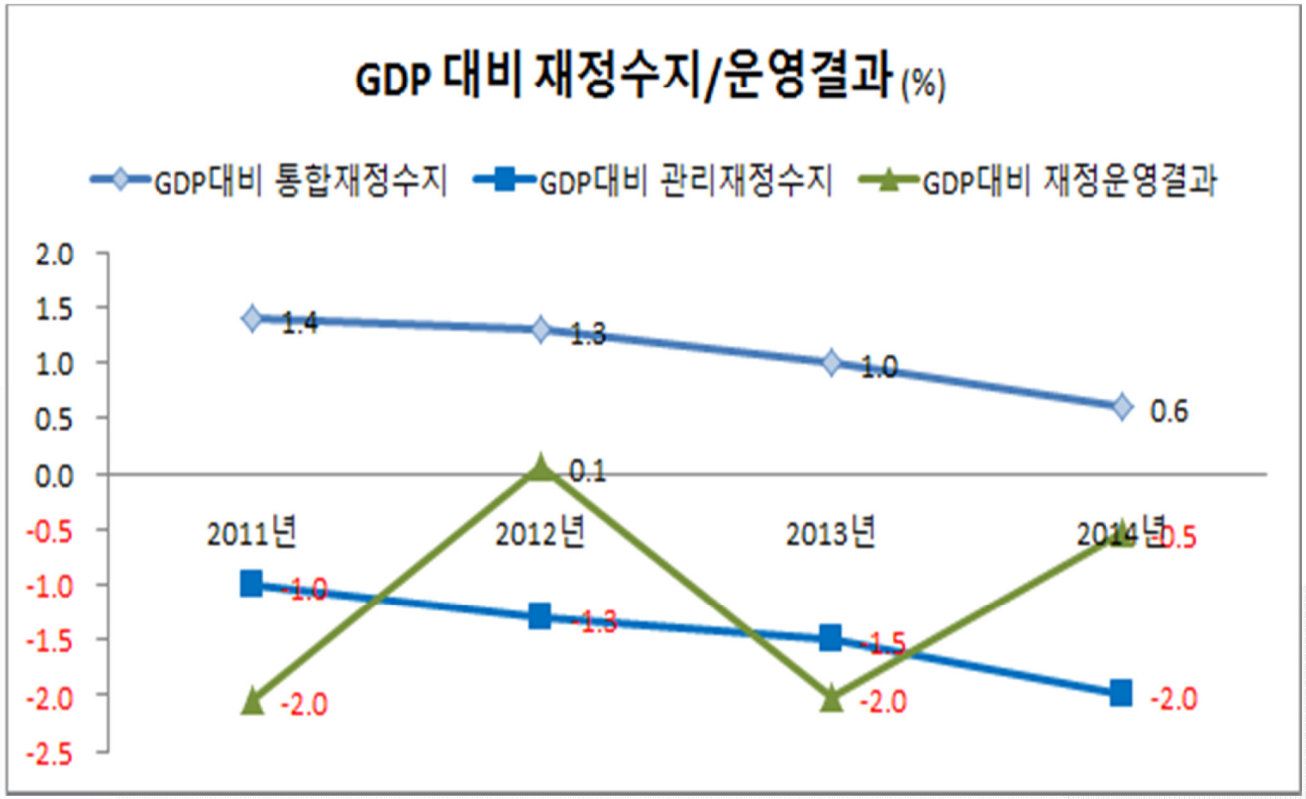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재정운영순원가와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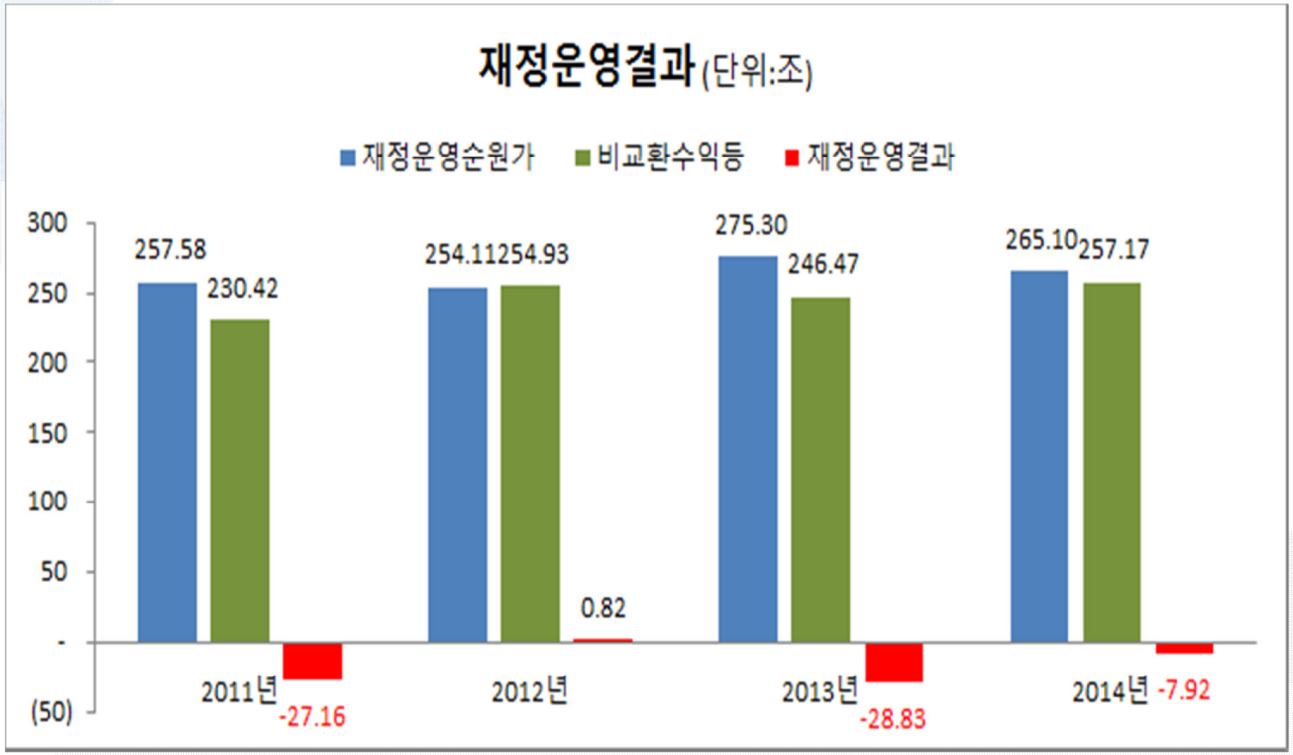

19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 재정운영순원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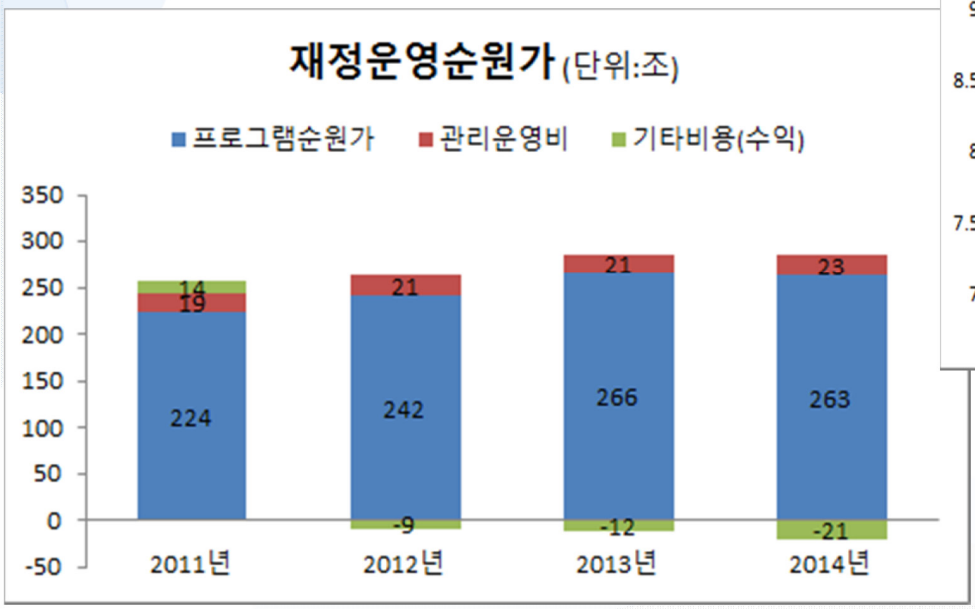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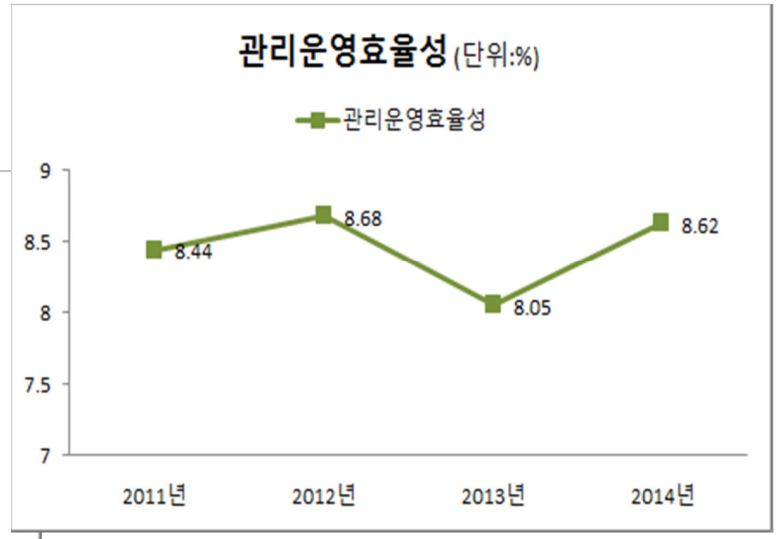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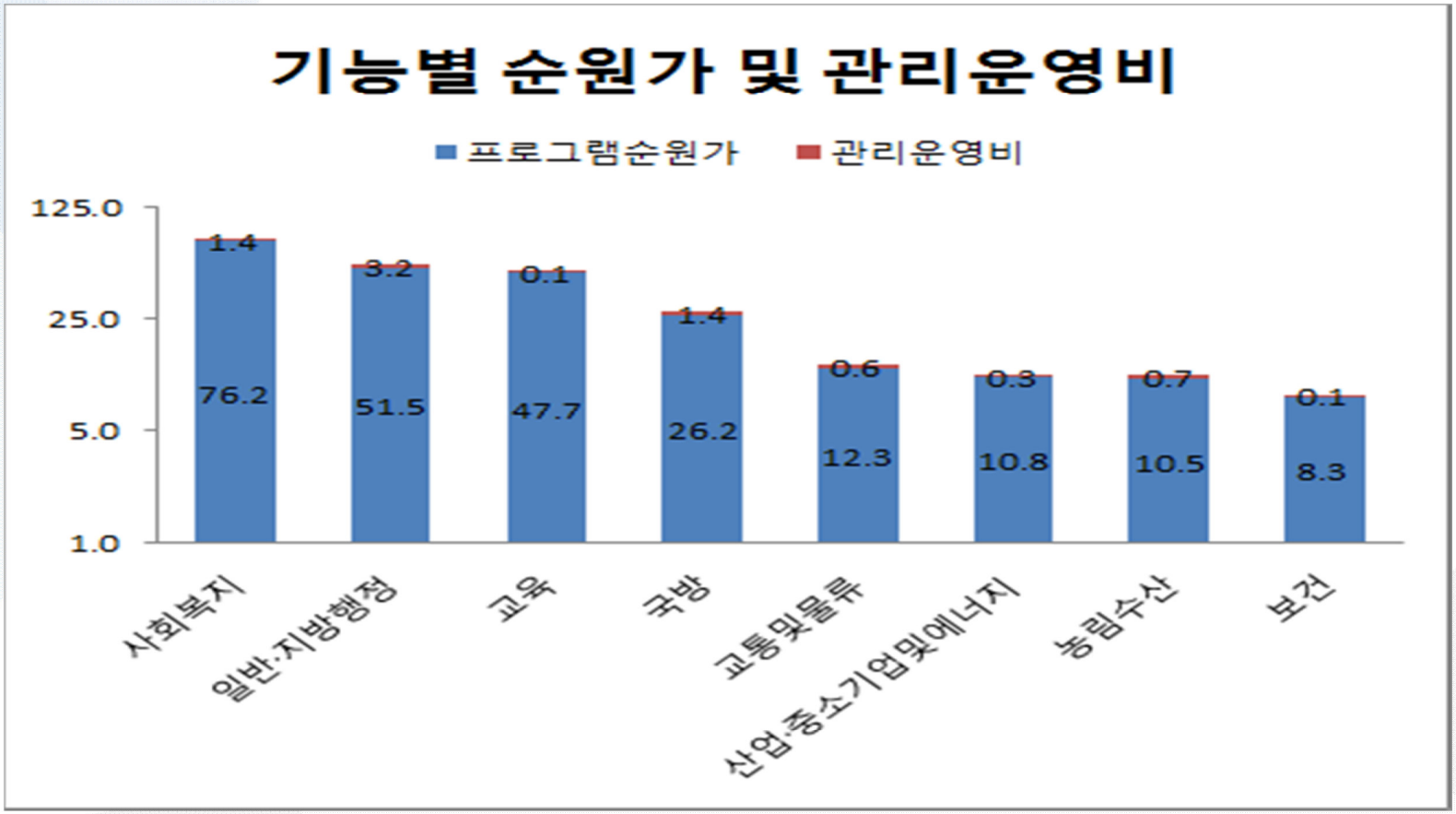

21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 비교환수익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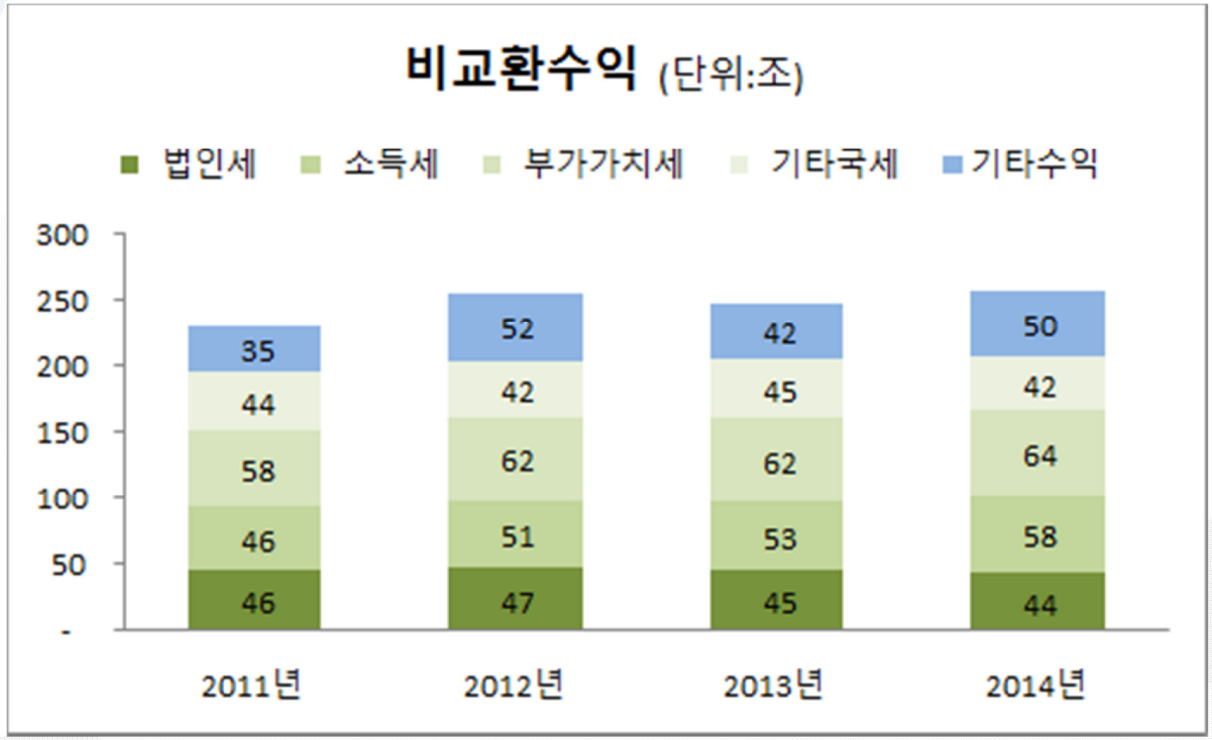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 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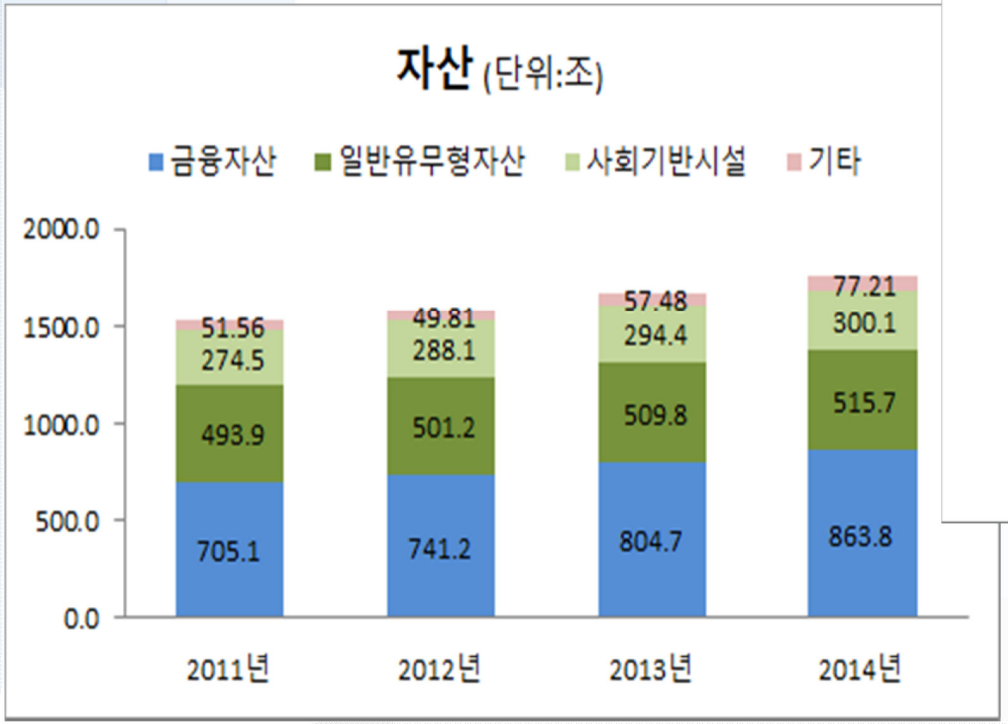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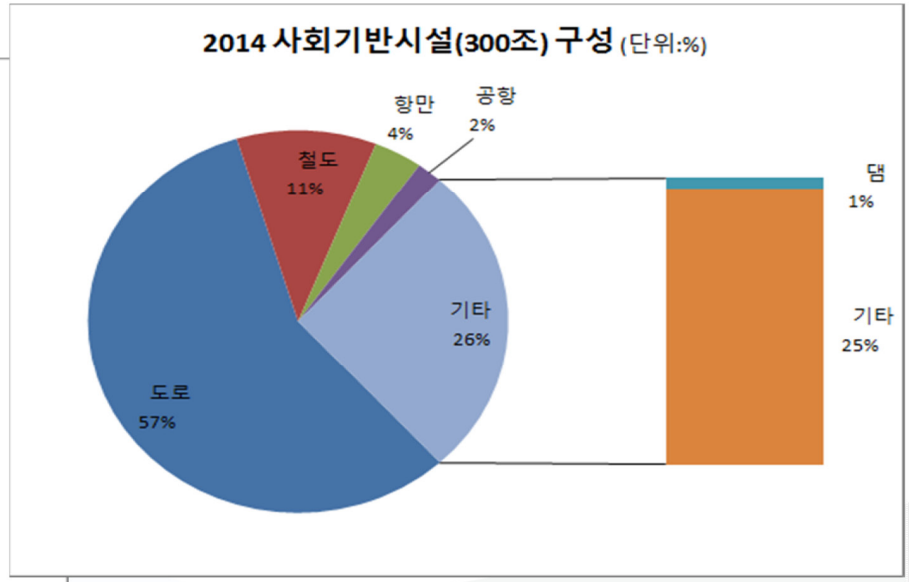

23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 현금기준/발생기준 부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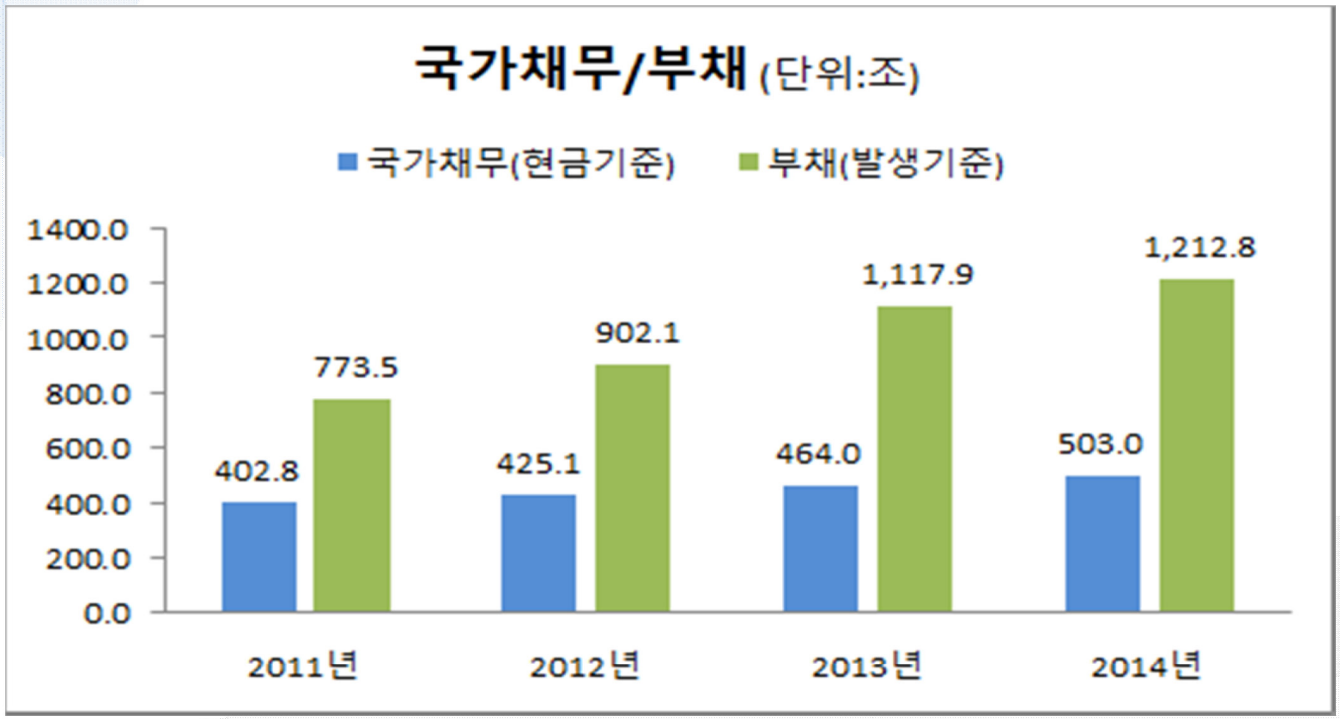

알기쉬운 결산보고 재무제표 분석(예)

▶ 부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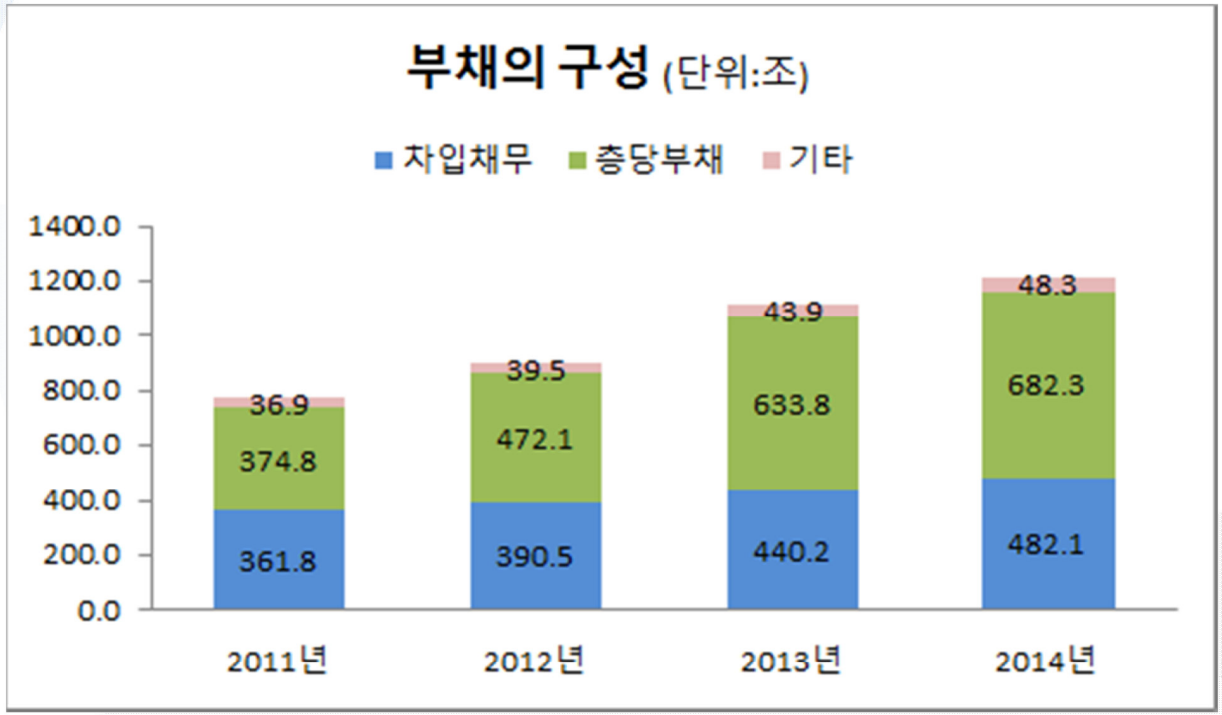

25

국가재무제표 Q&A (예)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배경과 도입된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공공회계책임(accountability)이란 무엇인가?
-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발생주의회계란 무엇인가?
- 재정수지, 세계잉여금, 재정운영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른 것인가?
- 연금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란 무엇인가?
-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이란 무엇인가?
- 순원가(net cost)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 정부가 왜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본자산을 보고해야 하는가?
- 국가결산서를 보고서 정부의 재정건전성(financial health)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 국가재무제표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론 및 추가 고려사항

▶ 국가재무제표(보고)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정보요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해례와 전파전략이 필요함

▶ 내용측면 고려사항

- 국가재무결산의 안정화가 필요
- 향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완

▶ 보고 주체와 방법 측면 고려사항

- 주무부처가 결산개요에 대한 요약본으로 웹페이지에 공시
- 향후 본보고서에 대국민 보고형태로 포함

27

제3주제

중앙관서 재무회계정보 품질 평가 체계 구축

• 발표 :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심포지엄

중앙관서 재무회계정보 품질 평가 체계 구축

2015. 12. 10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승엽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Ⅰ. 개요

1. 연구목적

▪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마련

2. 평가대상

▪ 2011 - 2014년 기간중 '열린재정'을 통해 결산정보가 제공되는 **38개 중앙관서**

- 동 기간중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폐합 또는 신설된 부처**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된 부처** 제외

3. 평가방법

▪ (Part 1) 전 부처 통합 평가

- 전 부처를 종합한 국가 재무제표의 품질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 지표의 유의성 검증

▪ (Part 2) 부처별 평가

- 개별 부처 평가시 분석결과의 유의성을 제고하고자 **통계적 기법에 기초한 추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본 방법론은 정기적인 평가 등 실무적 목적에 따라 **직전년도 대비 단순 증감 분석** 등 보다 단순화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4. 평가항목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 재정운영표상 **비배분수익/비용** 비중 및 추이 등 분석

→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수익 및 비용**으로 중앙관서 회계처리의 적정성 평가

B. 회계정보의 구체성

-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당 원가** 및 **프로그램수 추이** 등 분석

→ **프로그램에 중앙관서의 핵심 활동**이 요약/제시되므로 금액이 크고 프로그램 수가 적을수록 회계정보의 구체성이 낮음을 의미

C. 회계정보의 정확성

-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 및 추이 등 분석

→ 전기오류수정은 **과거 재무제표 작성상의 오류**를 의미하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저하

D. 회계정보의 예측가능성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계정과목(Level 3)의 평균 변동성** 분석

→ 재무정보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정보이용자의 예측가능성 및 정보유용성 저하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1. 평가지표 선정 배경

▪ **정부 활동에 대한 원가의 측정과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수익 및 비용이 프로그램별로 적정하게 배분될 필요

2. 평가 방법

▪ **김봉환·최윤정 (2013) 모형** 확장 적용

- 평가기간을 2011-2014년으로 확대하고, 비배분비용 외에 비배분수익에도 적용

$$Ln(종속변수) = \beta_0 + \beta_1 * 회계연도 + \beta_2 * ln(프로그램총원가) + \beta_3 * ln(관리운영비) + \beta_4 * ln(재정운영결과) + \beta_5 * ln(일반유형자산) + \beta_6 * 부채비율 + \beta_6 * 비배분수익비율 + 중앙관서\ Fixed\ Effects + \varepsilon$$

※ 참고사항

1. 직전년도말 자산 대비 금액
2. 종속변수 : '비배분비용/수익 총액 및 비율', '명시 비배분비용/수익', '비명시 비배분비용/수익' 등
3. 명시 비배분비용 : 이자비용, 자산감액/처분손실, 평가손실
   명시 비배분수익 :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4. 비배분수익 모형 : 'β_6*비배분수익비율'의 'β_6*비배분비용비율' 대체 외 동일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3. 부처 통합 평가결과

- (비배분비용) 2011-2014년 기간중 **전반적 감소(개선) 추세**
  - 다만, 2014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악화)

※ 비배분비용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ln(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 비율			
	계수	t-value	Pr > |t|		계수	t-value	Pr > |t|	
절편	0.20	0.17	0.87		-0.06	-1.39	0.17	
2012년	-1.63	-6.25	<.0001	***	-0.09	-2.74	0.01	***
2013년	-1.78	-6.62	<.0001	***	-0.10	-3.57	0.00	***
2014년	-1.55	-6.1	<.0001	***	-0.10	-3.28	0.00	***
ln(프로그램총원가)	-1.30	-4.25	<.0001	***	-0.03	-3.24	0.00	***
ln(관리운영비)	0.46	1.38	0.17		-0.02	-2.47	0.02	**
ln(재정운영결과)	0.99	2.92	0.00	***	0.05	2.39	0.02	**
ln(일반유형자산계)	0.79	3.19	0.00	***	-0.04	-3.35	0.00	***
부채비율	0.04	3.08	0.00	***	0.02	7.26	<.0001	***
비배분수익비율	0.44	0.52	0.61		0.15	3.98	0.00	***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116				118			
Adjusted R^2	0.8387				0.8820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3. 부처 통합 평가결과

▪ (비배분비용) 2011-2014년 기간중 '**명시 비배분비용**' 및 '**비명시 비배분비용**' 모두 **전반적 감소** 추세

- 다만, 2014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악화)

※ 비배분비용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명시 비배분비용				비명시 비배분비용			
	계수	t-value	Pr > |t|		계수	t-value	Pr > |t|	
절편	-0.67	-0.23	0.82		-1.42	-1.05	0.30	
2012년	-4.34	-6.3	<.0001	***	-0.64	-2.56	0.01	**
2013년	-4.79	-6.75	<.0001	***	-0.88	-3.63	0.00	***
2014년	-2.63	-4.35	<.0001	***	-0.78	-3.21	0.00	***
ln(프로그램총원가)	-1.29	-1.5	0.14		-0.90	-2.73	0.01	***
ln(관리운영비)	0.61	0.73	0.47		0.59	2.1	0.04	**
ln(재정운영결과)	0.45	0.43	0.67		0.70	2.74	0.01	***
ln(일반유형자산계)	0.13	0.16	0.88		0.63	3.5	0.00	***
부채비율	0.15	2.32	0.02	**	0.03	4.52	<.0001	***
비배분수익비율	0.87	0.34	0.73		1.26	1.2	0.23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100				116		
Adjusted R^2		0.5262				0.9290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3. 부처 통합 평가결과

- (비배분수익) 2011-2014년 기간중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다만, 2012년에 비해 2013-2014년의 경우 감소

※ 비배분수익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ln(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 비율			
	계수	t-value	Pr > |t|		계수	t-value	Pr > |t|	
절편	-1.61	-2.01	0.05	**	0.90	7.84	<.0001	***
2012년	0.70	4.28	<.0001	***	0.08	2.98	0.00	***
2013년	0.47	2.79	0.01	***	0.04	1.33	0.19	
2014년	0.51	2.81	0.01	***	0.06	2.14	0.04	**
ln(프로그램총원가)	0.23	0.82	0.42		-0.04	-1.09	0.28	
ln(관리운영비)	0.79	2.54	0.01	**	0.04	1.17	0.25	
ln(재정운영결과)	-0.63	-2.03	0.05	**	0.00	0.17	0.86	
ln(일반유형자산계)	0.08	0.36	0.72		0.00	0.2	0.84	
부채비율	0.03	1.19	0.24		0.00	-1.03	0.31	
비배분비용비율	2.90	2.33	0.02	**	0.31	2.43	0.02	**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118				118			
Adjusted R^2	0.8509				0.8658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3. 부처 통합 평가결과

▪ (비배분수익) 2011-2014년 기간중 **'비명시'는 증가**한 반면, **'명시'는 감소**

* 현재 국가회계기준상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외 수익의 경우 프로그램별 대응이 어려워 비배분수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회계기준에서 규정 (현실적 제약)

※ 비배분수익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명시 비배분수익				비명시 비배분수익			
	계수	t-value	Pr > |t|		계수	t-value	Pr > |t|	
절편	-6.66	-2.39	0.02	**	-2.86	-3.29	0.00	***
2012년	-0.33	-0.82	0.42		1.02	5.11	<.0001	***
2013년	-0.90	-2.11	0.04	**	0.73	3.74	0.00	***
2014년	-0.49	-1.23	0.22		0.78	3.91	0.00	***
ln(프로그램총원가)	1.14	0.92	0.36		0.19	0.58	0.56	
ln(관리운영비)	-1.84	-1.81	0.08	*	0.44	1.4	0.17	
ln(재정운영결과)	-0.76	-1.29	0.20		-0.30	-1.02	0.31	
ln(일반유형자산계)	5.58	3.03	0.00	***	0.14	0.57	0.57	
부채비율	-0.20	-7.69	<.0001	***	0.02	0.73	0.47	
비배분비용비율	1.76	0.82	0.42		2.92	2.1	0.04	**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98				118		
Adjusted R^2		0.6885				0.9422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4. 부처별 평가결과

- 명시 비배분비용, 비명시 비배분비용, 명시 비배분수익 등 3개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감소**(개선) **또는 증가**(악화) **추세** 비교

A. 부처별 명시 비배분비용 추이

부처명	명시 비배분비용	white-t	white-p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49	-Infty	<.0001	***
특허청	-3.29	-3.27	0.0820	*
국회	-2.84	-3.02	0.0942	*
병무청	-2.06	-3.20	0.0854	*
문화재청	-1.86	-Infty	<.0001	***
국방부	-1.45	-3.35	0.0786	*
방위사업청	-0.54	-3.60	0.0693	*
중소기업청	-0.38	-12.78	0.0061	***
통일부	-0.19	-4.23	0.0516	*
여성가족부	-0.01	-Infty	<.0001	***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4. 부처별 평가결과

- 명시 비배분비용, 비명시 비배분비용, 명시 비배분수익 등 3개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감소**(개선) **또는 증가**(악화) **추세** 비교

B. 부처별 비명시 비배분비용 추이

부처명	비명시 비배분비용	white-t	white-p	
조달청	-3.67	-10.24	0.009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6	-7.14	0.019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1	-9.27	0.0114	**
통계청	-1.27	-4.52	0.045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95	-9.28	0.0114	**
대법원	-0.94	-20.75	0.0023	***
농촌진흥청	-0.78	-13.46	0.0055	***
관세청	-0.75	-4.98	0.0380	**
국가보훈처	-0.65	-11.38	0.0076	***
기획재정부	-0.50	-16.77	0.0035	***
방위사업청	-0.42	-6.97	0.0200	**
고용노동부	-0.26	-5.71	0.0293	**
기상청	-0.23	-4.84	0.0401	**
국세청	-0.16	-12.57	0.0063	***
환경부	0.37	5.65	0.0299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82	10.60	0.0088	***
방송통신위원회	1.48	3.62	0.0685	*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4. 부처별 평가결과

- 명시 비배분비용, 비명시 비배분비용, 명시 비배분수익 등 3개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감소**(개선) **또는 증가**(악화) **추세** 비교

C. 부처별 명시 비배분수익 추이

부처명	명시 비배분수익	white-t	white-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7	-3.05	0.0926	*
경찰청	-0.62	0.22	- 2.8200	***
여성가족부	-0.49	-23.26	0.0018	***
중소기업청	-0.34	-5.36	0.0331	**
환경부	-0.34	-36.98	0.0007	***
산림청	-0.18	-9.19	0.0116	**
기획재정부	-0.15	-5.31	0.0337	**
보건복지부	-0.14	-26.88	0.0014	***
특허청	0.21	35.54	0.0008	***
국회	0.76	17.18	0.0370	**
관세청	0.79	20.57	0.0024	***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B. 회계정보의 구체성 (프로그램당 원가 및 프로그램수 분석)

1. 평가지표 선정 배경

- 프로그램당 원가는 **각 부처가 수행한 활동 내역이 재무적으로 표시되는 핵심 정보**로 국민, 언론 등 정보이용자의 정보유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2. 평가 방법

- (프로그램당 원가) 프로그램당 원가의 **연도별 변화 추세** 분석
- (프로그램수) 프로그램수의 **연도별 변화 추세** 분석

A. (부처통합 분석모형) **프로그램당 원가**

$\ln$(프로그램당 원가) = β_0 + β_1*회계연도(or 추세변수)
+ β_2*$\ln$(프로그램총원가) + 중앙관서 Fixed Effects + ε

※ 프로그램당 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항목수

B. (부처통합 분석모형) **프로그램 항목수**

프로그램수 = β_0 + β_1*회계연도(or 추세변수) +
β_2* △프로그램총원가 + β_3* 프로그램총원가 + 중앙관서 Fixed Effects + ε

Cf. 개별 부처 분석모형

- 부처통합 모형과 달리 **부처 특성 감안 불필요**

→ **"단순추세 분석모형"** 사용 (이하 동일)

종속변수* = β_0 + β_1* 추세변수 + ε

* 종속변수 : i) 프로그램당 원가, ii) 프로그램수

B. 회계정보의 구체성 (프로그램당 원가 및 프로그램수 분석)

3. 부처 통합 평가결과

- (프로그램당 원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는 존재**하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부족 (p-value=12%)
  - 다만, 2012년 감소후 2013년부터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점은 유의할 필요
- (프로그램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
  - 이는 프로그램의 세부화가 후퇴함의 의미
  - 특히, 2013년, 2014년에 걸쳐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점은 유의할 필요

※ 프로그램당 원가 추이

변수명	ln(항목별 원가)				ln(항목별 원가)			
	계수	t-value	Pr > |t|		계수	t-value	Pr > |t|	
절편	25.28	327.1	<.0001	***	25.36	372.1	<.0001	***
추세변수	0.05	1.56	0.12					
2012년					-0.03	-0.27	0.79	
2013년					0.05	0.52	0.60	
2014년					0.13	1.39	0.17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152.00				152.00	
Adjusted R^2			0.88				0.88	

※ 프로그램수 추이

변수명	항목수				항목수			
	계수	t-value	Pr > |t|		계수	t-value	Pr > |t|	
절편	2.32	4.09	0.00	***	1.49	5.25	<.0001	***
추세변수	-0.44	-2.49	0.02	**				
2013년					-0.60	-2.29	0.02	**
2014년					-0.88	-2.49	0.02	**
△프로그램총원가	0.00	1.95	0.05	*	0.00	1.96	0.05	*
프로그램총원가	0.00	0.47	0.64		0.00	0.47	0.64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114.00				114.00	
Adjusted R^2			0.97				0.97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B. 회계정보의 구체성 (프로그램당 원가 및 프로그램수 분석)

4. 부처별 평가결과

※ 프로그램수 추세

부처명	프로그램수	white-t	white-p	
산림청	0.90	6.27	0.0245	**
금융위원회	0.90	3.78	0.0633	*
국가보훈처	0.90	2.59	0.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0.70	6.05	0.0263	**
경찰청	0.60	2.59	0.1222	
공정거래위원회	0.60	2.59	0.1222	
통계청	0.60	2.59	0.122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30	2.59	0.1222	
법무부	0.30	2.59	0.1222	
병무청	0.30	2.59	0.1222	
조달청	0.30	2.59	0.1222	
관세청	-0.30	-2.59	0.1222	
법제처	-0.30	-2.59	0.1222	
특허청	-0.30	-2.59	0.1222	
기상청	-0.40	-6.67	0.0218	**
환경부	-0.40	-6.67	0.0218	**
고용노동부	-1.20	-2.59	0.1222	
여성가족부	-1.20	-2.59	0.1222	
기획재정부	-1.80	-7.09	0.0193	**
국방부	-2.00	-6.67	0.0218	**

Cf. 프로그램수 변화 사례

- 산림청 : '11년 5개 → '12/13년 7개 → '14년 8개
- 국방부 : '11/12년 20개 → '13/14년 15개

※ 프로그램당 원가 추세

부처명	프로그램당 원가	white-t	white-p	
금융위원회	-103,349,000,000	-9.70	0.0105	**
산림청	-24,292,700,000	-4.50	0.0460	**
방송통신위원회	-10,253,100,000	-6.11	0.0258	**
공정거래위원회	-6,097,644,861	-3.05	0.0927	*
법제처	-1,761,638,262	-3.08	0.0912	*
국가인권위원회	1,225,617,636	15.31	0.0042	***
통일부	1,330,200,126	4.20	0.0524	*
국회	1,409,936,752	4.21	0.0521	*
관세청	2,859,838,892	10.45	0.0090	***
헌법재판소	2,870,356,004	11.08	0.0080	***
국민권익위원회	3,166,763,708	13.78	0.0052	***
감사원	5,388,472,384	8.25	0.0144	**
문화체육관광부	6,543,895,713	42.53	0.0006	***
기상청	6,834,680,617	49.35	0.0004	***
특허청	12,093,783,055	5.82	0.0283	**
여성가족부	15,134,655,317	8.78	0.0127	**
법무부	15,434,473,513	20.46	0.0024	***
환경부	43,544,849,939	4.76	0.0415	**
기획재정부	52,872,799,358	15.40	0.004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5,422,681,840	4.13	0.0540	*
보건복지부	114,596,300,000	15.97	0.0039	***
고용노동부	193,515,300,000	5.02	0.0374	**
국방부	374,791,800,000	8.94	0.0123	**

C. 회계정보의 정확성 (전기오류수정손익 분석)

1. 평가지표 선정 배경

- 전기오류수정사항은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의미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평가 방법

- (중대한 오류) 연도별, 부처별 **오류(금액)비중 및 오류회수 직접 평가**
-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오류(금액)비중** 및 **오류회수**에 대해 **통계 분석**

※ 변수 정의

- **오류비중** = $\sum_{FY}$|계정과목별 오류금액| / 중요성 기준금액, where 중요성 기준금액 = (총자산 + 프로그램총원가) / 2
- **오류회수** = 프로그램수익/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 등 5개 계정과목중 오류 발생 계정과목수

※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통계분석 모형

- **오류비중 :** $\ln(\text{오류비중}) = \beta_0 + \beta_1 * \text{회계연도} + \beta_2 * \ln(\text{프로그램총원가}) + \text{중앙관서 Fixed Effects} + \varepsilon$
- **오류회수 :** $\text{오류회수} = \beta_0 + \beta_1 * \text{회계연도} + \text{중앙관서 Fixed Effects} + \varepsilon$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C. 회계정보의 정확성 (전기오류수정손익 분석)

3. 중대한 오류 평가결과

▪ 오류회수, 금액, 비중 모두 **감소 추세**

※ 중대한 오류 현황

(연도별 추이)

FY	오류횟수	오류액(억원)	오류비중 누계
2011	5	16,792	60.09%
2012	4	22,947	84.30%
2013	1	899	6.14%
2014	0	-	0.00%

(부처별 현황_2011-2014년 평균)

부처명	오류횟수	오류액(억원)	오류비중	순위
방위사업청	0.5	9,029	25.25%	1
법제처	0.25	11	9.54%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5	261	1.90%	3
고용노동부	0.25	470	0.29%	5
문화체육관광부	0.25	260	0.48%	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25	4	0.11%	6
금융위원회	0.25	122	0.06%	7
법무부	0.25	3	0.01%	8

C. 회계정보의 정확성 (전기오류수정손익 분석)

4.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평가결과

▪ (부처 통합) 오류비중 및 오류회수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다만, 2012년 증가후 2013년부터는 오류비중의 경우 **상승 추세가 완화**되었으며, 오류회수는 **완만한 감소 추세** 시현

※ (부처 통합)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현황

변수명	ln(오류비중)				오류회수			
	Coeff.	t-value	Pr > |t|		Coeff.	t-value	Pr > |t|	
절편	0.0169	0.74	0.4623		0.82	5.34	<.0001	***
2012년	0.0114	4.05	<.0001	***	1.05	5.65	<.0001	***
2013년	0.0033	1.78	0.0781	*	1.00	4.7	<.0001	***
2014년	0.0054	2.84	0.0054	***	0.82	4.12	<.0001	***
ln(프로그램총원가)	-0.0009	-0.95	0.3442					
부처 fixed effect control	YES				YES			
관측치수	152				152			
Adjusted R^2	0.2580				0.1905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C. 회계정보의 정확성 (전기오류수정손익 분석)

4.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평가결과

※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비중 현황

부처명	오류비중
문화재청	0.036877
국방부	0.026491
방위사업청	0.026378
국민권익위원회	0.0234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14889
환경부	0.014808
기상청	0.013926
법무부	0.013553
경찰청	0.013057
⋮	
통계청	0.000886
보건복지부	0.000686
금융위원회	0.0002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00199
통일부	0.000129
감사원	0.00008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000071
원자력안전위원회	0.000000

※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회수 현황

부처명	오류회수
산림청	2.75
국가보훈처	2.50
보건복지부	2.50
국세청	2.25
환경부	2.25
고용노동부	2.00
금융위원회	2.00
농촌진흥청	2.00
문화체육관광부	2.00
⋮	
공정거래위원회	1.25
국가인권위원회	0.7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75
국민권익위원회	0.7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75
법제처	0.7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75
헌법재판소	0.75
원자력안전위원회	0.00

C. 회계정보의 정확성 (전기오류수정손익 분석)

4.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평가결과

※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비중 추이

부처명	오류비중 추이	white-t	white-p	
문화재청	0.0230	5.90	0.0275	**
법무부	0.0076	3.83	0.0620	*
법제처	0.0049	3.11	0.0895	*
여성가족부	0.0029	6.23	0.0248	**
산림청	0.0014	4.64	0.0434	**
관세청	0.0008	4.27	0.0508	*
금융위원회	0.0001	3.18	0.0864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0001	2.95	0.0984	*
통일부	0.0001	4.40	0.0480	**
고용노동부	-0.0010	-5.57	0.0307	**
조달청	-0.0012	-5.90	0.0275	**
공정거래위원회	-0.0041	-3.13	0.0888	*

Cf. 개별 부처 분석모형

- 부처통합 모형과 달리 **부처 특성 감안 불필요**

→ **"단순추세 분석모형"** 사용

$$종속변수^{*} = \beta_0 + \beta_1 * 추세변수 + \varepsilon$$

* 종속변수 : i) 오류비중, ii) 오류회수

※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회수 추이

부처명	오류회수 추이	white-t	white-p	
법제처	0.70	6.05	0.0263	**
감사원	0.60	2.59	0.1222	
경찰청	0.60	2.59	0.1222	
관세청	0.60	2.59	0.1222	
국회	0.60	2.59	0.1222	
기상청	0.60	2.59	0.1222	
대법원	0.60	2.59	0.1222	
법무부	0.60	2.59	0.1222	
병무청	0.60	2.59	0.1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60	2.59	0.1222	
통계청	0.60	2.59	0.1222	
통일부	0.60	2.59	0.1222	
특허청	0.60	2.59	0.122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50	2.67	0.1161	
국방부	0.30	2.59	0.1222	
국세청	0.30	2.59	0.1222	
기획재정부	0.30	2.59	0.1222	
문화재청	0.30	2.59	0.1222	
여성가족부	0.30	2.59	0.1222	
중소기업청	0.30	2.59	0.1222	
방송통신위원회	-0.30	-2.59	0.1222	
환경부	-0.30	-2.59	0.1222	
방위사업청	-0.40	-6.67	0.0218	**
조달청	-0.40	-6.67	0.021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50	-2.67	0.1161	
공정거래위원회	-0.70	-6.05	0.0263	**

Ⅱ. 평가 방법론 및 결과

D. 회계정보의 예측가능성 (계정과목 평균 변동성)

1. 평가지표 선정 배경

▪ **계정과목 수치가 안정적**(persistent)이어야만 정보이용자의 예측가능성 및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 증가

2. 평가 방법

▪ **계정과목**(Level 3) **연평균 변동성**(표준편차) 계산

A.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평균 변동성(표준편차)

▪ 평균변동성(표준편차) = $\frac{1}{N}\sum_{j=1}^{N}\sqrt{\frac{1}{Y}\sum_{i=1}^{Y}(\%\triangle_{ij})^2}$,

where Y = 회계연도수, i = 회계연도, N = 계정과목수, j = (소분류) 계정과목
%△ = (당기 계정과목 금액 – 전기 계정과목 금액) / 직전년도말 총자산

B. 재무제표 평균 변동성(표준편차) = (재정상태표 변동성 + 재정운영표 변동성) / 2

※ 참고사항 : 1. 재정상태표 변동성 산출시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 제외
2. 재정운영표 변동성 산출시 '당기 프로그램총원가'로 표준화

D. 회계정보의 예측가능성 (계정과목 평균 변동성)

4. 부처별 평가

▪ 부처별로 **편차가 존재**하나, **대부분 5% 이하의 변동성**으로 재무정보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cf. 공정거래/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우발부채 또는 자산이관 등의 예외적 상황으로 높은 변동성 시현

- 공정거래위원회 : 2013년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에 대해 3,200억원 충당부채 신규 인식
- 방송통신위원회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함께 이관

※ 부처별 재무제표 변동성 평가 결과

부처명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평균	순위
보건복지부	0.0018	0.0030	0.0024	1
국가보훈처	0.0069	0.0013	0.0041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0064	0.0024	0.0044	3
중소기업청	0.0032	0.0059	0.0046	4
헌법재판소	0.0016	0.0083	0.0049	5
환경부	0.0068	0.0046	0.0057	6
통계청	0.0112	0.0033	0.0072	7
문화체육관광부	0.0074	0.0071	0.0073	8
⋮				
관세청	0.0106	0.1036	0.0571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0211	0.1192	0.0702	33
방위사업청	0.1144	0.0264	0.0704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055	0.3695	0.1875	35
대법원	0.0027	0.7791	0.3909	36
공정거래위원회	2.7046	0.1603	1.4324	37
방송통신위원회	8.8736	0.0504	4.4620	38

Ⅲ. 총평

1. 평가 결과

A. 비용/수익 배분의 적정성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 비배분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개선 추세**
  - 다만,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점은 유의할 필요
- 비배분수익은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

B. 회계정보 구체성 (프로그램당 원가 및 프로그램수 분석)

- 프로그램당 원가 추세는 불분명하나, 프로그램수가 감소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구체성 후퇴**
  - 많은 부처가 프로그램 관련 예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프로그램 분류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예산규모를 반영한 프로그램별 세부 원가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C. 회계정보 정확성 (전기오류수정 분석)

- **중대한 오류**는 **감소 추세**이나,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

D. 회계정보 예측가능성 (계정과목 변동성 분석)

- 우발부채, 업무 이관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

2. 기대효과

A.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지표 → 비용/수익의 프로그램 배분 개선

B. 프로그램당 원가 및 프로그램수 분석 지표 → 프로그램 원가 정보의 구체화

C. 전기오류수정 분석 지표 → 오류 발생 감소를 통한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D. 계정과목 변동성 분석 지표 →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3. 활용방안

- 지표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종합지수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가능
- 기타 비계량 지표와도 통합 활용 가능
  (예. 회계정보 생산 과정 관련 회계투명성 지표)

제4주제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 발표 : **전규안** (숭실대학교)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2015. 12. 10.

전규안 (숭실대학교)

배성규 (대현회계법인)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00 목차

1.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2.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통제

3. 공공기관 회계기준 적용의 현안

4. 결론

1.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체계
-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01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회계사항을 규정
- 그러나 이 규칙 적용의 예외(기금에 관한 회계)와 적용의 준용(K-IFRS 등 회계기준) 사항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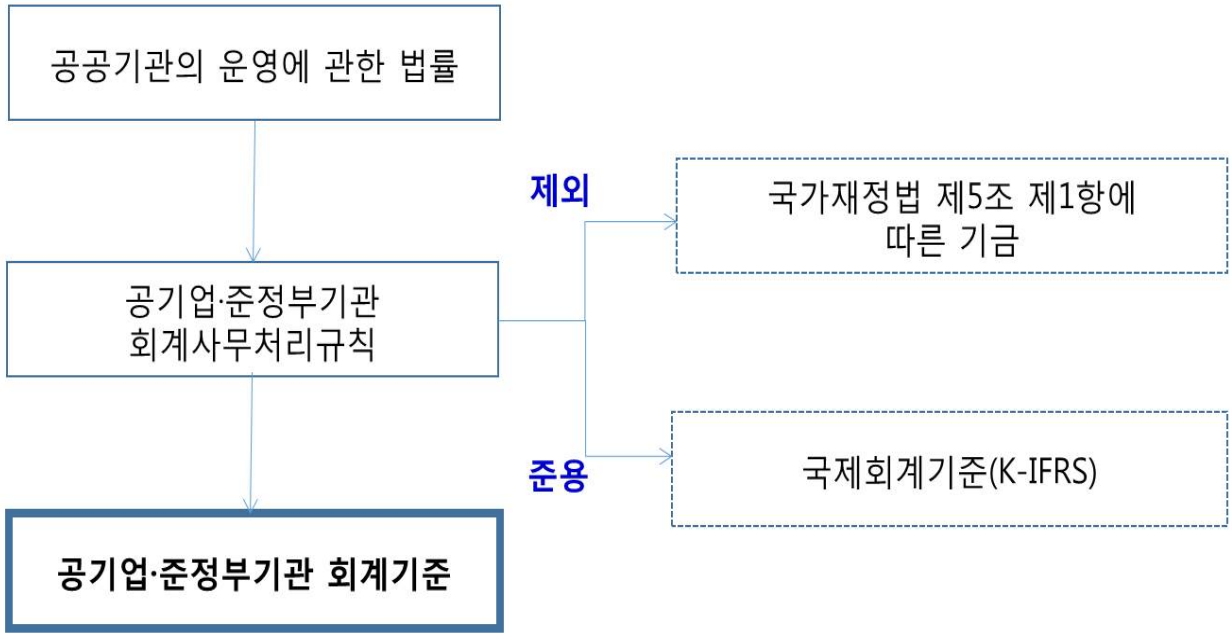

01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 이러한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환경은 **다양한 회계기준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성
  - ✓ 공공기관은 기관의 유형과 고유목적사업 특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국가회계기준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 ✓ 이러한 다양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단일의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과 차별성이 있음

02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체계

공공기관 공시체계의 연혁

- **2005년 12월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PUBMIS)을 통해 제한적인 공시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 **2007년부터는 공공기관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통합 공시제도가 도입**

개정시기	주요내용
2005. 12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제도가 처음 도입(20개 항목)
2006. 12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전환 [PUBMIS(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알리오시스템]
2009. 3월	.공시항목 확대(27→33개) .**불성실공시제도 시행**
2009. 7월	.노동조합, 복리후생 세부내역 공시 확대
2010. 1월	.수시공시 확대 및 공시주기 단축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강화** .공시항목 유형화
2010. 8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 항목 개정
2011. 2월	.공시항목 확대(33→34개, 신규 : 납세정보) .수도권외 지역인재 채용실적 세부항목 추가
2012. 3월	.유연근무현황 신규 공시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공기업 : '10년 ~ '11년) 공시
2013. 12월	.복리후생 8대 정보 및 12개 기관 부채정보 추가 공시

02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체계

공공기관 공시정보 활용의 현황

▪ 알리오시스템(ALIO)의 매년 접속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의 접근성 수준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무제표 등의 경영공시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상태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의 이용현황(2009.12~2010.9)

(단위 : 건수)

메뉴	방문자수		페이지뷰		전체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알리오소개	21,193	5.84%	35,281	0.87%	1.27%
경영공시(재무정보)	**211,217**	**58.23%**	**2,289,035**	**56.23%**	**56.40%**
정보센터	123,460	34.04%	1,735,092	42.63%	41.92%
참여마당	6,850	1.89%	11,175	0.27%	0.41%
계	362,720	100%	4,070,583	100%	100%

자료출처 : 김진수 등(2010)

02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체계

공공기관 공시정보 활용의 현황

- **언론보도에 활용** : 공공기관에 관한 언론보도가 알리오시스템의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데도 경영정보의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 최근에서 공공기업의 연봉수준, 복리후생 및 부채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룸

- **학계·연구계의 활용** : 학계 및 연구원(소)에서도 알리오시스템의 경영정보를 활용한 실증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경영정보체계에서 축적된 자료의 활용수준이 높아짐
  - ✓ 김준기・석조은(2010), 김창수・배상중(2011), 설홍균・최원석(2011), 유승원・김수희(2012), 남형우(2012), 유승원(2013), 김미옥 등(2014), 나철호 등(2015), 허경선(2015) 등 다수가 있으며, 최근에 공공기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활발

- **정부·경영평가단의 활용** :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부처 및 경영평가단이 알리오시스템의 경영정보를 활용한 정책입안 및 평가 수행

02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체계

공공기관 공시의 문제점

- **불성실 공시기관(2014년 총 22개 기관)** : 공시정보에 오류, 빈번한 수정 및 허위자료 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공시한 경영정보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며, 이는 오히려 공시제도에 대한 유효성까지 문제

- **내일신문 2014.4.24.(목)의 보도기사** : "**공공기관 재무제표 작성 오류 빈번**"에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 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
  - ✓ 전기오류수정의 과다와 알리오시스템상의 금액과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의 불일치를 지적
  - ✓ '09~'12년간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34개 기관에서 92건(1,508억원)의 전기오류수정 사항 발견
  - ✓ 2012년도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의 알리오시스템상 공시와 감사보고서의 금액에 대하여 18개 기관이 불일치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분석의 개요

-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회계(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라는 근본적 질적특성
  - ✓ 이 중 표현충실성에 대한 보강적 질적특성 : 완전성(completeness), 중립성(neutrality) 및 **무오류(free from error)**
- 재무정보의 품질이나 보고이익의 품질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전기오류수정** 또는 **재무제표 재작성 행위를 활용**하고 있음
  - ✓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있는 경우, 전기분 재무정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정보는 전년도 당시의 수치와 당년도 수치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 : DeFond and Jiambalvo(1991), 김문철. 황인태(1996) 및 송혁준 등(2008) 등의 연구
- 재무정보의 제공수단인 **재무제표는 중요성(materiality)의 원칙**에 따라 작성됨
  - ✓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 표시되어 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보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됨
  - ✓ 중요성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 내지 판단기준으로서 회계계정(항목)을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한 요건
- 재무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를 감사**받도록 하고 있음
  -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회계감사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분석의 개요

-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을 1) 정책변경 및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2) 중요성의 원칙, 3) 감사품질로 측정
- 분석대상 : 2011~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 (8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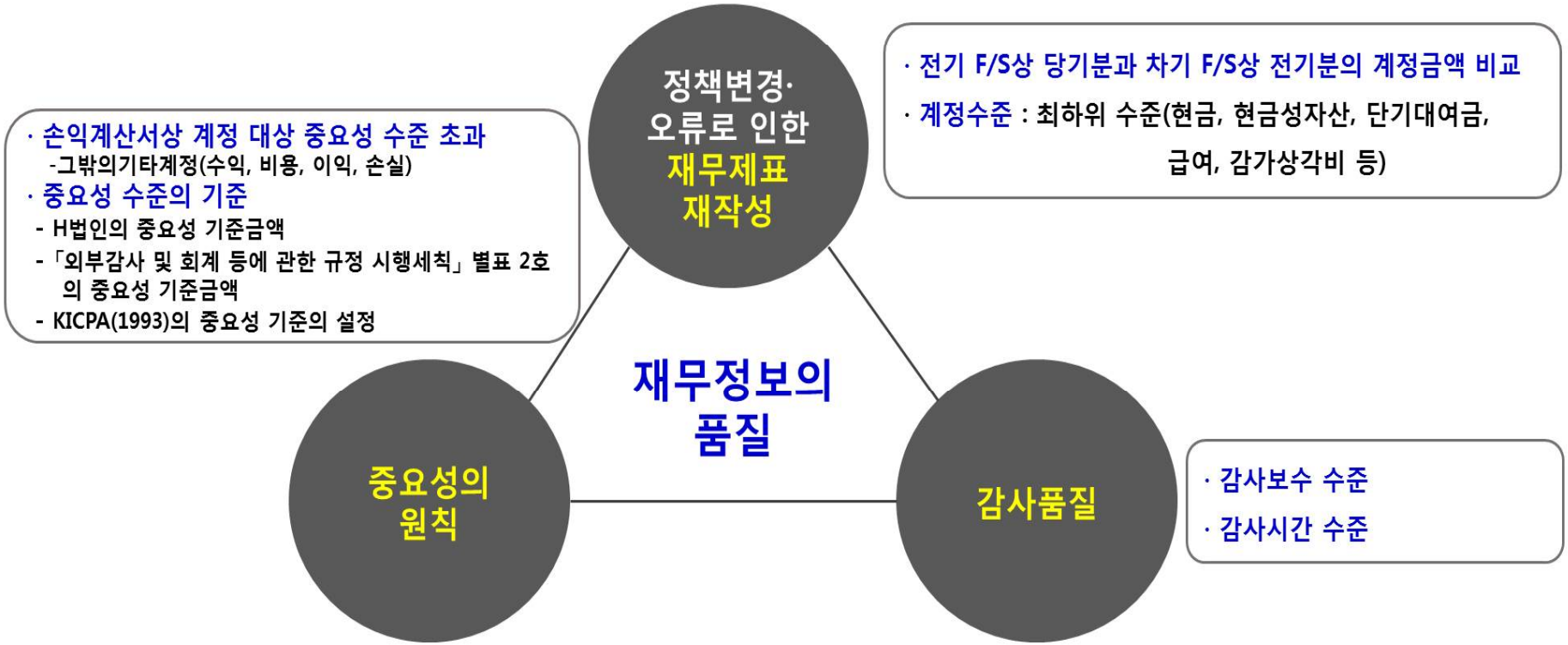

11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정책변경·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 **공공기관 당 재무제표 재작성 평균 계정수는 공기업은 연 6.43개, 준정부기관은 연 5.56개 수준**
  - ✓ 2012년 준정부기관의 재작성 계정이 13.58인데, 이는 정부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법령개정으로 인한 것임
  - ✓ 따라서 준정부기관의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책변경 사항을 제외한다면 연 1.55개 수준
- **따라서 준정부기관에 비해 공기업의 정책변경·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빈도가 높음**
  - ✓ 공기업 재무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계정금액의 변동에 따른 재무정보의 품질이 저하

기관 당 재무제표 재작성 평균 계정수

(단위 : 계정 수)

구 분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공기업	6.43	6.87	6.93	5.50
준정부기관	5.56	1.36	13.58*	1.74

* 20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개정부분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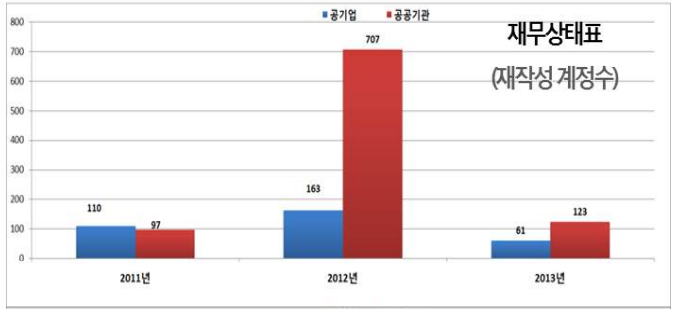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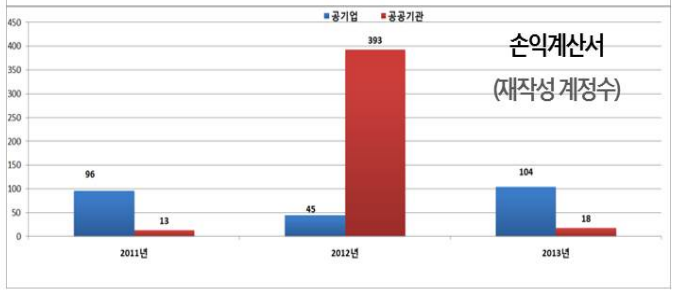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정책변경·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 대비 재무상태표 재작성 평균 기관 수는 60.6%의 수준 :** 공기업은 28.9%, 준정부기관은 62.6% 기관 수준
- 또한 **전체 공공기관 대비 손익계산서 재작성 평균 기관 수는 32.3%의 수준 :** 공기업은 42.6%, 준정부기관은 28.5% 기관 수준

➔ 일반 상장기업 재무제표 재작성 비율(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평균 약 25%,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평균 약 10%)보다 높은 수준

전체 기관 대비 재무제표 재작성 평균 기관 수 (단위 : %)

구분	전체	자산				부채				자본			
		소계	11년	12년	13년	소계	11년	12년	13년	소계	11년	12년	13년
전체	60.6	53.5	36.9	61.3	62.2	75.1	87.4	78.4	59.5	53.2	36.0	60.4	63.3
공기업	33.8	28.9	46.7	20.0	20.0	51.1	83.3	60.0	10.0	21.5	33.3	23.3	7.7
준정부기관	70.4	62.6	33.3	76.5*	77.8	84.0	88.9	85.2*	77.8	64.8	37.0	74.1*	83.3

구 분	전체	수익				비용				기타포괄손익			
		소계	11년	12년	13년	소계	11년	12년	13년	소계	11년	12년	13년
전체	32.3	38.7	15.3	21.6	79.3	45.9	55.0	66.7	16.2	12.3	9.9	12.6	14.4
공기업	42.6	54.4	46.7	56.7	60.0	35.6	23.3	23.3	60.0	37.8	33.3	26.7	53.3
준정부기관	28.5	32.9	3.7	8.6	86.4	49.8	66.7	82.7	0.0	2.9	1.2	7.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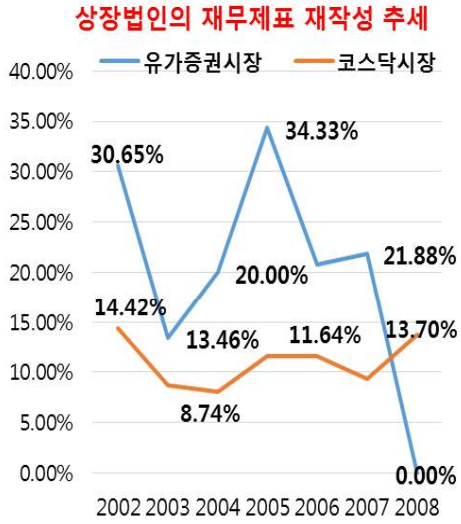

*자료출처 : 오명전·이재홍(2010) p.17.

13

* 20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개정 부분이 포함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정책변경·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 **재무제표 재작성 계정의 변동금액의 기술통계량 :** 변동금액 = (차기 재무상태표의 전기분-전기 재무상태표의 당기분)

✓ A사 : 2011년도분(감가상각비 4,930백만원 감소, 24,322백만원 증가), 2012년도분(현금 57,777백만원 감소, 기타자본 99,749백만원 증가)

✓ B사 : 2011년도분(현재가치할인차금 27,915백만원 감소, 12,515백만원 증가), 2012년분(현금성자산 317,259백만원 감소, 손상차손누계 1,004,418백만원 증가)

✓ C사 : 2012년도분(현금 254,182백만원 감소, 건물 1,753,548백만원 증가), 2013년도분(현재가치할인차금 3,644,178백만원 감소, 단기선수금 245,206백만원 증가)

✓ D사 : 2011년도분과 2013년도분(현재가치할인차금 7,458,713백만원, 7,777,714백만원 증가), 2013년도분(현금성자산 578,178백만원 증가)

재무상태표 재작성 계정의 변동금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수	N	평균	합계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A사	2011년	3	10,865	32,595	-4,930	13,202	24,322
	2012년	9	8,099	72,897	-57,777	-1	99,749
	2013년	1	-52,670				
B사	2011년	4	-3,495	-13,978	-27,915	710	12,515
	2012년	4	204,972	819,890	-317,259	66,215	1,004,718
	2013년	1	-18,194				
C사	2011년	1	-3,446				
	2012년	7	280,816	1,965,714	-254,182	44,300	1,753,548
	2013년	4	-851,925	-3,407,698	-3,644,178	-4,364	245,206
D사	2011년	3	2,653,902	7,961,707	46,348	456,646	7,458,713
	2012년	4	-15,455,700	-61,822,800	-53,297,180	-8,026,134	7,526,652
	2013년	6	1,315,088	7,890,528	-559,492	40,523	7,777,714

* 위의 금액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오류로 재작성 전후의 금액변동크기를 나타냄. 따라서 법령개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일 수 있음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중요성의 원칙

- **중요성 기준금액의 판단대상**
  - ✓공공기관의 손익계산서상 "그밖의기타비용, 그밖의기타수익, 그밖의기타손실, 그밖의기타이익" 계정
    - ➢ 기관 고유사업과 관련성이 낮으며, 금액크기가 작은 계정들의 합
    - ➢ 만약 그밖의기타 계정에 하나의 큰 금액이 포함될 경우, 재무정보의 품질을 훼손시킬 수 있음
    - ➔ 이 계정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보다 큰 경우, 정보이용자에게 구분표시해야 재무정보 품질이 높다는 가정
- **중요성 기준금액의 산출근거**
  - ✓(1)「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 2호의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상의 중요성 기준
    - ➢ 감리대상 회계연도 의 기말 자산총액, 매출액, 규모조정계수를 고려
      - ➔ (기말 자산총액, 매출액의 평균)의 1~10%(유형별)
  - ✓(2) H법인과 PwC의 중요성 기준 : 세전이익 5%(또는 10%)
  - ✓(3) KICPA(1993)의 감사지침서상의 중요성 기준
    - ➢ 매출액, 자산총액, 세전이익 고려
      - ➔ [Min(자산총액, 매출액) x 0.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10%] / 2

15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중요성의 원칙

▪ 그밖의기타계정의 기술통계량 : 준정부기관은 그밖의기타손실과 이익 계정만을 사용.

✓ 중요성 기준금액이 H법인·PwC기준이 가장 낮으며, KICPA(1993)기준 그리고 양정기준 순으로 낮음

✓ H법인·PwC의 중요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할 경우 약 30.6%~36.5%의 기관이 기준금액을 초과

중요성 기준금액 초과 기관 비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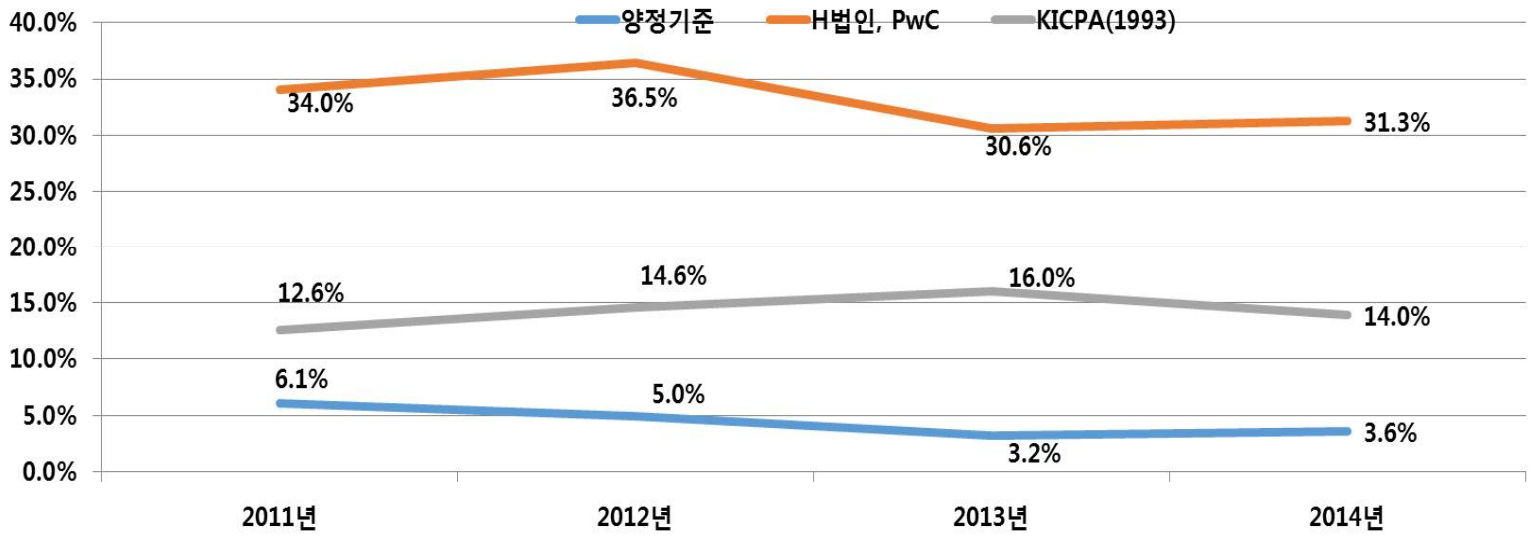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중요성의 원칙

▪ 그밖의 기타계정이 중요성 기준금액 초과 기관 수.

✓ H법인·PwC의 중요성 기준금액인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밖의 기타계정 금액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현행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상의 중요성 기준금액을 적용할 경우 14~27개 기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정기준의 중요성 기준금액		그밖의기타 계정(기관 수)				
		계	비용	수익	손실	이익
2011년	소계	27	2	4	6	15
	공기업	9	2	4	1	2
	준정부기관	18	0	0	5	13
2012년	소계	22	1	4	3	14
	공기업	6	1	4	0	1
	준정부기관	16	0	0	3	13
2013년	소계	14	1	3	5	5
	공기업	8	1	3	3	1
	준정부기관	6	0	0	2	4
2014년	소계	16	1	2	5	8
	공기업	6	1	2	1	2
	준정부기관	10	0	0	4	6

H법인·PwC의 중요성 기준금액		그밖의기타 계정(기관 수)				
		계	비용	수익	손실	이익
2011년	소계	151	10	14	50	77
	공기업	51	10	14	13	14
	준정부기관	100	0	0	37	63
2012년	소계	162	15	15	51	81
	공기업	63	15	15	16	17
	준정부기관	99	0	0	35	64
2013년	소계	136	13	15	49	59
	공기업	65	13	15	19	18
	준정부기관	71	0	0	30	41
2014년	소계	139	11	15	51	62
	공기업	60	11	15	17	17
	준정부기관	79	0	0	34	45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감사보수 수준

▪ 공공기관 당 평균 감사보수 : 72.4백만원으로 6백만원~1,305백만원 수준

✓ 총자산 대비 감사보수는 평균 약 0.06%,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는 0.025% 수준

✓ 일반 상장법인의 감사보수 평균 117백만원, 총자산 대비 감사보수 평균 0.085%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감사보수수준의 기술통계량(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제1사 분위수	중위수	제3사 분위수	최대값
감사보수 (백만원)	72.4	150.4	6.0	15.3	28.4	55.0	1,305.7
총자산 대비 감사보수 (%)	0.0596	0.1394	0.0001	0.0022	0.0096	0.0440	1.3703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 (%)	0.0244	0.0301	0.0001	0.0055	0.0137	0.0331	0.3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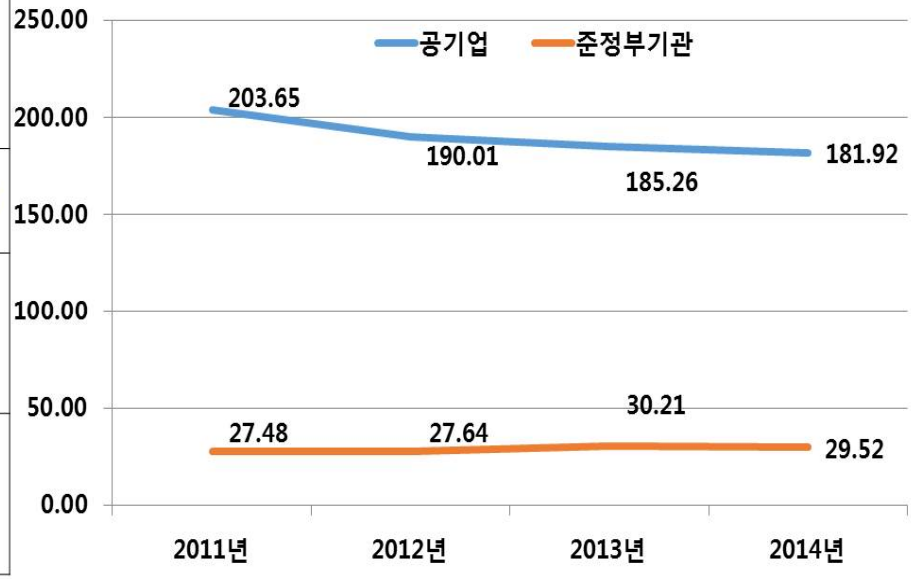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감사시간 수준

▪ 공공기관 당 평균 감사시간 : 1,350시간으로 공기업은 평균 3,620시간, 준정부기관은 319시간을 투입

✓ 감사시간 당 감사보수는 평균 약 95천원으로 공기업은 약 91천원, 공공기관은 약 97천원

✓ 상장법인의 평균 감사시간은 1,566시간(2014년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으로 공공기관보다 많으며, 공공기관은 적은 감사시간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감사시간 당 감사보수 75천원보다 시간당 감사보수가 많은 편임

감사시간수준의 기술통계량(2014년)

(단위 : 시간, 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전체	감사시간(시간)	1,350	2,842	96	186	310	663	16,808
	시간 당 보수(원)	94,887	70,733	22,477	51,381	74,237	103,498	375,000
공기업	감사시간(시간)	3,620	4,329	100	567	1,558	5,103	16,808
	시간 당 보수(원)	90,669	88,188	42,692	49,724	67,512	73,938	360,606
준정부기관	감사시간(시간)	319	259	96	180	244	352	1,600
	시간 당 보수(원)	96,804	62,304	22,477	51,465	89,877	106,931	3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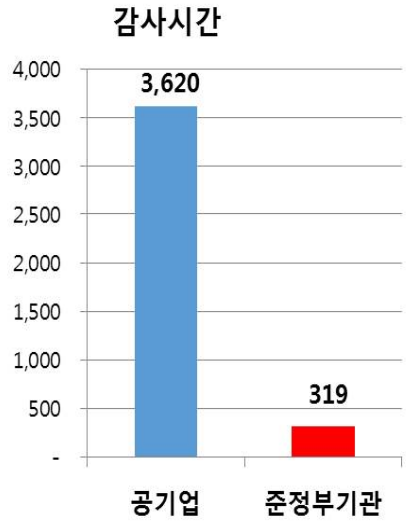

19

03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평가

소결

▪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을 정책변경·오류로 인한 재작성, 그밖의 기타계정의 중요성 기준금액 초과 및 감사보수수준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정책변경·오류로 인한 재작성 실태가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빈도와 금액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부 정부보조금 또는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시기와 재무제표 작성시키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만, 재무정보 이용자입장에서의 품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그밖의 기타계정은 기관 고유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요성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관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음 : 그밖의 기타계정에 대한 '구분표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결산지침 등)가 요구됨

✓ 외부감사 보수수준과 감사시간이 일반 상장법인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정보의 품질 수준도 낮을 가능성

2.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통제

01 공공기관 재무정보 통제

구 분		주식회사	공공기관
사전	재무제표 작성 책임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명문화(외감법 제7조)	없음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의 선임, 해임, 지정,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존재(외감법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 제4조의4,제4조의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의3)과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2)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4조,제7조,제8조)에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규정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법제화된 규정 존재(외감법 제2조의2,제2조의3)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21조),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3조)에서 “내부통제” 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없음
사후	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국제감사기준 도입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21조): 감사원은「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검사 수행 *국제감사기준(본 기준에 공공기관 감사도 포함) 도입 검토 중
	감리제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행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16조): 감사원은「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암묵적 통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	-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한 통제, 소관부처에 의한 통제 - 상장 공기업과 회사채 발행기관은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 가능

01 공공기관 재무정보 통제

- 공공기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명문화
- 감사인의 선임, 해임, 지정,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명문화
  - ✓ 설문조사결과: 내부관리회계제도의 구축과 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하여 38.89%가 찬성. 45.83%은 반대
- 회계감사기준의 명문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과의 관계 정립 필요
- 감리제도의 명문화 검토
  - ✓ 설문조사결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
  - ✓ [참고] 사학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사립학교법」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3. 회계기준 적용 현안

- 회계기준 현안
-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 평가
-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 연결재무제표

01 회계기준 현안

- 공공기관 **총 491건의 질의회신** 중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104개로 집계됨
  - ✓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104건을 항목별로 분류**한 결과, **정부보조금**(22건), **위탁사업**(14건), **기본재산**(9건) 순으로 나타남
  - ✓ 이 중에서 퇴직급여부채와 연차수당 등은 2013년에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
  - ✓ 정부보조금, 위탁사업, 기본재산 등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감사원의 201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등 검토 결과,
  - ✓ 4대강 관련 **무형자산의 손상평가**에 대한 지적사항
  - ✓ 과거 공항공사의 **공항시설관리권 손상** 이슈
  - ✓ 최근의 항만공사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02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평가

▪ 항만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 출자에 따른 손상인식** 이슈

✓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형자산인 '항만시설관리권'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출자받으며, 이 때 출자가액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향후 약 1조원 규모의 항만시설관리권 출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와 동시에 4~5천억원 규모(예상)의 자산손상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 울산) 모두가 직면한 문제임

<표 - 인천항만공사법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와 손상 인식>

현행 인천항만공사법	비고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 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문단6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생략)

<표 -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관리권 출자시 예상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구분	차변		대변	
출자시	자산	962,463	자본금	962,463
결산시	손상차손	430,000	당기순손실 (이익잉여금)	430,000

02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평가

▪ 손상평가에 대한 회계기준 검토 – 자산의 정의

✓ IFRS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으로 자산을 정의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및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이에 더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도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의 '서비스잠재력'

✓ '서비스잠재력'은 순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실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자산으로 시장경쟁이 없거나 제한적 시장경쟁이 존재하는 부문에서 제공된다고 설명

<표 - 회계기준별 개념체계 ; '자산'의 정의>

IFRS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자산은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서비스잠재력을 가진 항목이다. 서비스잠재력은 실체로 하여금 순현금유입을 발생시킬 필요성 없이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02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평가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의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국가회계기준의 '사회기반시설의 손상'

구 분	공공국제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공공서비스 자산 개념	'서비스잠재력이 존재하는 자산의 현재가치'로 정의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공공서비스 자산 범위	[비현금창출자산] 현금창출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자산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없음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대규모 투자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유형자산과는 별도로 '사회기반시설' 로 분류
공공서비스 자산의 손상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 '서비스잠재력이 존재하는 자산의 현재가치'로 정의함에 따라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기반한 손상'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비현금창출 자산의 사용가치 산정	[비현금창출자산의 사용가치] 상각후대체원가법, 복구비용접근법, 용역단위접근법으로 산정 공공서비스 제공 자산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기반한 손상'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재평가시에는 재조달원가법 등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래 현금흐름유입액에 기반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02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평가

▪ 공공기관 회계기준에서의 비현금창출자산 손상 개념의 도입 필요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사업의 공공성 그리고 서비스 공급 가격의 규제 등의 측면에서 비현금창출자산 또는 공공서비스자산 개념의 도입 필요 검토

✓ 현재는 동일한 항만시설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보유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지만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후에는 손상평가를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소유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문제

구 분	정부보유 '항만시설자산'	공공기관 보유 '항만시설관리권' 자산
감가상각	[취득원가 계상] 취득당시 용역잠재력 유지시 감가상각 미수행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손상평가	멸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평가 하지 않음	출자가액(조성원가)과 공정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가)의 차이를 손상인식

29

02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평가

▪ 비현금창출자산의 범위 설정 기준(예시 안)

✓ 비현금창출자산을 공공서비스 자산으로 정의한다면, 공공성, 독점성, 가격경쟁 유무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설정기준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표 - 비현금창출자산 범위 설정기준(예시)>

설정기준	특 징	대상자산 예시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사용권	• 국가회계기준과의 일치성 • 공공서비스 자산의 범위보다 지나치게 협소하여, 타 공공서비스 제공자산이 제외됨	항만시설관리권 등
공공성과 독점성(가격규제, 시장제한) 기준	• 공공서비스 자산의 개념에 비교적 충실 • 세부적인 판단기준 필요 •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산정기준의 '규제서비스 판단기준' 등 활용 가능성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학교용지, 공공용지 등(*)
공공성 기준	• 기관의 목적사업 자산은 공공성 확보되며, 수익 목적의 자체사업 자산은 제외 • 광의의 개념으로 공공기관 자산 대부분이 제외됨	광물공사 투자광구

(*) 재고자산은 현재 저가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

03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 위탁사업에 대한 IFRS 예외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위탁사업'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IFRS 예외 규정을 두어 총액으로 위탁사업비와 위탁사업수익을 인식하도록 함

✓ 대부분 위탁집행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IFRS에 따라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준정부기관의 손익계산서에는 기관 인건비와 운영비만 표시되고,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수행 총량이 재무제표에서 누락되어 정보이용자인 국가 등에게 목적적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

<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위탁사업비 총액 인식>

제48조(위탁사업비의 인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게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한다.

<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위탁자산의 처리>

제44조의3(위탁자산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부 등 제3자로부터 관리·처분 등의 목적으로 위탁받은 자산은 동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31

03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 위탁사업 회계처리에 대한 기관별 혼재

✓ IFRS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는 위탁사업비와 위탁자산의 회계처리에 있어 차이 존재

✓ 이러한 차이는 특히 국가 R&D 연구비 전담기관에서 발생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순액 회계처리로 인하여 약 1.7조원~2조원의 주요사업 수행 내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관의 운영사업 예산만 매출액에 반영되었음

<표 - 국가 R&D 연구비 전담기관별 회계처리 비교(예시)>

기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인식 여부	금 액	수익인식	금액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시안하고 주석으로만 공시	1.5조원	순액	816억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단기금융상품의 정부보조금으로 차감 표시	0.8조원	순액	241억원
산업기술진흥원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수탁사업자금으로 차감 표시	1.2조원	총액	1.2조원

<표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요사업 현황과 매출액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구분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주요사업 현황 (경영공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936,260	593,20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20,767	299,948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사업	309,323	412,325
	기타산업기술개발사업	581,083	498,598
	소 계	2,147,433	1,804,072
결산서상 수탁사업수익		81,640	76,068
차 이		2,065,793	1,728,004

03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 총액과 순액 회계처리 주장 근거

✓ 각 기관의 총액과 순액 회계처리의 주장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총액처리 주장 근거	순액처리 주장 근거
• 단순히 사업비를 받아서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 기관은 예산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므로 기관의 자산이나 수익이 아님.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볼 때 기관의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므로 순액 회계처리가 타당함.
• 전담기관이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수행기관을 직접 선발하여 지급하며,	• 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비를 전담기관이 수령했을 때 수입처리하고, 전담기관에서 주관기관으로 넘어갈 때도 수입처리하면 전체 집계시 이중으로 집계되는 문제점 발생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전체를 위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타 기관 위탁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과거 정부지침상 순액으로 회계처리요구

33

03 정부대행사업 회계처리

▪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위탁사업 회계처리

✓ 연구비 전담기관의 경우에도 타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처리 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

✓ 준정부기관의 총사업 수행량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정보의 효용 등 공공기관 재무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비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개념체계에서의 '공공부문 재무보고 목적'은 위탁사업에 대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개념체계 - 공공부문 재무보고 목적>

2. 대부분 공공부문 실체의 주된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지분에 대한 보상을 배분하기보다 공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공부문 실체의 성과는 오직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검토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용자에게 재무보고 책임과 의사결정 목적달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실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의 문제와 관련한 평가를 뒷받침할만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해당 실체가 구성원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미래의 지출을 위해 현재 이용가능한 자원 및 이의 사용에 있어 별도의 제약이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 현재 서비스 지불을 위해 미래 세대 납세자의 부담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
- 해당 실체의 서비스 제공능력이 전년도와 비교해 향상되거나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04 연결재무제표

▪ 공공기관의 공공 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이슈

✓ 공공기관은 현재 IFRS를 적용하여 종속회사를 판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종속회사 또한 공공기관으로 모회사보다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모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일부 공공기관, 특히 비상장 공공기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예를 들어, 광물자원공사 등의 투자광구 SPC는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을 것이나, 학교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JDC의 경우에는 학교 경영 관여에 제한이 있고 학교법인의 잔여재산도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기관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연결대산 포함 여부에 의문이 있음

35

04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의 정보가치 및 작성능력 이슈

✓ 공공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기관 내•외부에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예를 들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 지분법' 실적으로 부채비율이나 계량관리업무비 지표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기준으로 관리업무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임

✓ 공공기관의 재무제표는 통상 2월말까지 외부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공공기관의 결산이 2월 경에서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과 기관의 결산 담당자 부족으로, 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04 연결재무제표

▪ 연결 면제 규정 적용 등 검토

✓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배력 유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함

✓ 이를 통해 살펴 보면, 공공기관의 종속회사의 최상위 지배기관은 정부이고, 종속회사의 모 공공기관은 중간지배회사에 해당함

✓ IFRS에서는 중간 지배회사에 대한 연결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결론

01 결론

-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 ✓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감소 노력 필요
  - ✓ 그밖의 기타계정에 대한 '구분표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결산지침 등)가 요구됨
  - ✓ 외부감사 시간 증가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 노력 필요

-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통제의 제고를 위해,**
  - ✓ 공공기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명문화
  - ✓ 감사인의 선임, 해임, 지정,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보완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 ✓ 회계감사기준의 명문화
  - ✓ 감리제도의 명문화 검토

01 결론

- **공공기관 고유의 회계현안 해결과 공공기관간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 ✓ 공공기관 회계기준에서의 비현금창출자산 개념 도입 검토
  - ✓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통일 필요
  -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면제 규정 적용 등에 대한 검토

- **공공기관 적용 다양한 회계기준에 대한 Control Tower 기능 설정의 필요성**
  - ✓ 공공기관 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K-IFRS가 혼재된 회계환경에서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적용과 해석에 혼란수준이 높은 상태
  - ✓ 공공기관마다 고유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적용과 해석이 다양한 현실
  - ✓ 또한 회계현안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
  - ✓ 따라서 Control Tower가 필요

01 결론

▪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 ✓ 과거 각 기관별 특례 회계처리 등이 존재하던 것을 IFRS를 중심으로 정비하여 , 체계적인 회계기준 체계가 마련됨
- ✓ 향후, 공공기관 특수성과 회계기준 연구를 통하여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발전적 방향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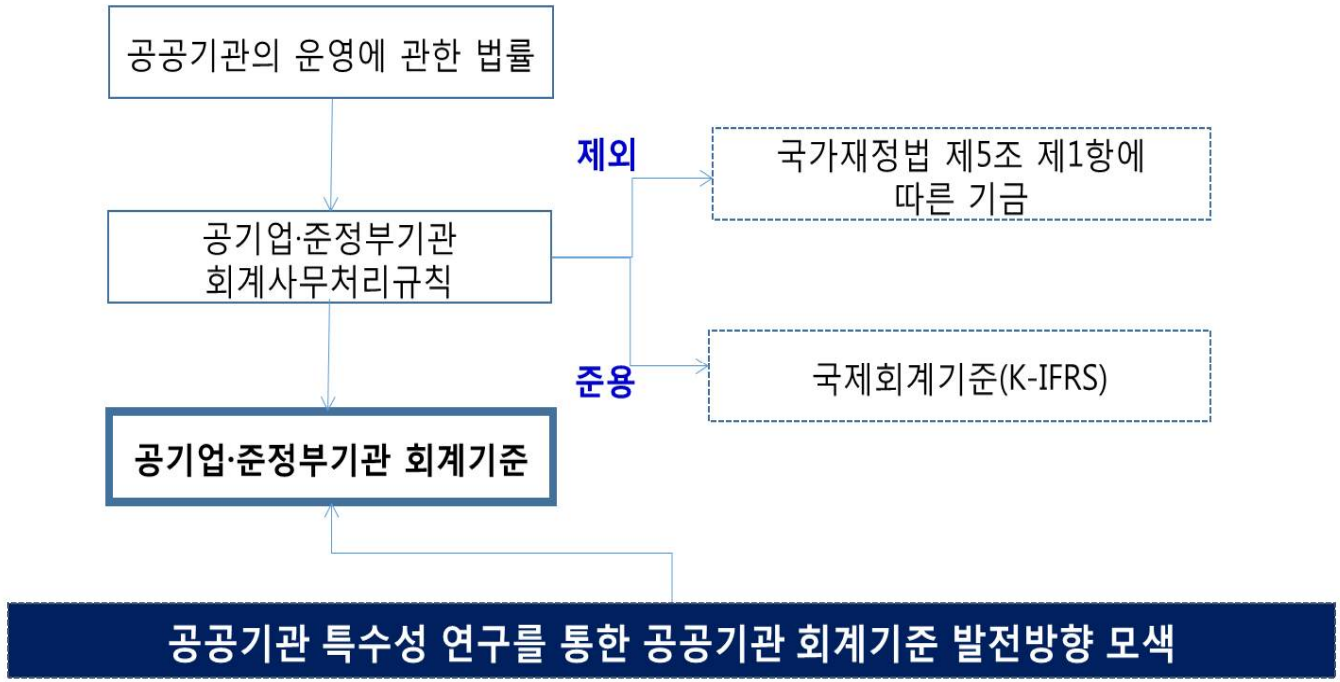

41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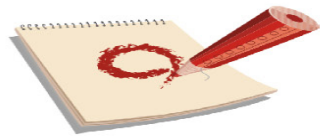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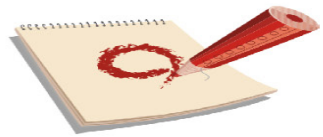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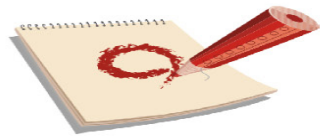
MEMO